

2025회 계 연 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해 양 수 산 부 소관
농 촌 진 흥 청 소관
산 림 청 소관
해 양 경 찰 청 소관

2026. 9.

농 림 축 산 식 품 해 양 수 산 위 원 회

202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26.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소관부처 회부 결산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1) 일반회계
-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3)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 (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7) 양곡관리특별회계
- (8)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9) 농지관리기금
- (10)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11)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12)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13) 축산발전기금
- (14) 양곡증권정리기금

나. 해양수산부 소관

- (1) 일반회계
-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3) 교통시설특별회계
- (4)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6) 수산발전기금

다. 농촌진흥청 소관

- (1) 일반회계
-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라. 산림청 소관

- (1) 일반회계
-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3)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마. 해양경찰청 소관

- (1) 일반회계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년 5월 29일

나. 회부일자 : 2026년 7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8. 26.)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8. 31.)

(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6. 9. 2.)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 · 해양경찰청)

상정 · 심사 · 의결(원안의결)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9. 2.)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 · 해양경찰청)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원안의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총괄

□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회계 등 7개 회계의 세입예산액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수입 계획액은 총계 기준 27조 9,280억원이고, 31조 4,438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30조 3,368억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조 1,066억원이 발생하였음.

□ 세출(지출) 예산은, 총계 기준 35조 1,751억원이며, 사업 집행과정에서 전년도 이월 등에 따른 세출예산(지출)현액은 37조 1,502억원으로, 이 중 35조 7,106억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1,589억원과 불용액 7,216억원이 각각 발생하였음.

【 2025회계연도 세입(수입)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수입계획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대비 수납증감 (B-A)
예 산	17,281,695	20,745,369	20,727,582	-	17,787	3,445,887
기 금	10,646,334	10,698,448	9,609,262	336	1,088,850	△1,037,072
총 계	27,928,029	31,443,816	30,336,844	336	1,106,636	2,408,815
총수입	13,052,425	15,537,504	14,430,531	336	1,106,636	1,378,106

* 총수입: 수입총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내부거래수입 - 보전수입

** 세입예산액(수입계획액)은 제2회 추경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2025회계연도 세출(지출)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출 예산액 (지출 계획액)	예산(지출)결정 후 증감액					예 산 (지출) 현 액	지출액	다 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기타 증감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예산	24,528,721	1,785,621	166,820	99,030 △99,030	66,522 △66,522	-	26,481,162	26,101,290	98,137	281,735
기금	10,646,334	22,688	-	-	-	209,654 △209,654	10,669,022	9,609,262	60,777	439,820
총계	35,175,055	1,808,309	166,820	99,030 △99,030	66,522 △66,522	209,654 △209,654	37,150,183	35,710,551	158,914	721,555
총지출	19,247,908	829,403	83,410	99,030 △99,030	66,522 △66,522	209,654 △5,427	20,364,947	19,872,141	158,914	333,892

* 총지출: 지출총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내부거래지출 - 보전지출

** 기타증감: 내역변경, 세목변경

*** 세출예산액(지출계획액)은 제2회 추경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② 사업별 검토

□ 첫째, ‘식품산업인프라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동 사업의 하위 내역사업인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은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및 지원하는 제도임.

그런데 같은 부처 내에서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을 융합하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제도도 운영되고 있어, 두 제도의

지원 취지와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보임.

특히, 2025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으로

신규지정된 사업자의 47.9%가 이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지원대상

중첩으로 인한 중복지원 및

재정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차별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둘째, ‘전략작물산업화’에 관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역사업인 ‘제품화패키지지원’사업에서

홈쇼핑 방송을 활용한 판로지원 사업을 수행하였음.

그런데 지원대상 4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지원액보다 낮은 매출액을 기록하였고, 홈쇼핑 방송의 시청

점유율이 0.1% 수준에 그치는 등

홈쇼핑 방송을 활용한 판로지원 사업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홈쇼핑 방송을 통한 판로지원을 개선하거나,

홈쇼핑 방송 외의 판로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동 내역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셋째, ‘농업재해보험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내역사업인 ‘농업수입안정보험’사업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순보험료와

보험사업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078억 1,700만원 중 38%인

791억 8,800만원만을 집행하였음.

이처럼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당초 예산 편성 시 품목별

특성 및 가입수요에 차이가 있음에도

9개 품목에 동일한 목표가입률 25%를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품목별 재배 특성과 보험 가입수요

등을 고려하여 목표가입률을 설정하고

실제 가입 수요에 부합하는 규모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넷째, ‘농업자금이차보전’과 관련하여,

동 사업은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농업자금 저리지원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최근 내역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5년에는 29개 내역사업으로 운영되었음.

그런데 최근 3년간 신규 편성된 내역사업 중 5개 사업은

융자 신청 또는 집행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추진 여건상 정책 수요가 부족했던

점과 사업 초기 인지도 부족 등을 그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신규 사업 추진에 앞서 검토가 가능한 사항으로서,

이와 같이 예산이 편성되고도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정책목적의 달성에도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규 내역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정책수요와 사업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한편,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다섯째,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은 첨단 농업기계 산업 육성을 위하여
개발 중인 농업기계의 성능·안전성을 시험할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국비 85억 6,6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설계 등 선행절차 지연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실집행률이 13.1%에 그치고,
약 81억원이 대규모로 이월되었으며,
2026년 7월 기준 공정률은 약 5%에 머물러
사업기간의 추가 연장이 우려되는 상황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대규모 건설사업의 예산 편성·교부

시 실제 사업단계와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로 편성 및 교부하는 한편,
단계별 공정과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대규모 이월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여섯째,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내역사업인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은 농어촌지역
빈집실태조사를 통하여 빈집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매물화하는
사업임.

그런데 빈집 매물 정보가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보화시스템에 각각 분리되어 등록됨에 따라
이용자의 접근성이 저하되고, 각각의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거나 상호 간에 데이터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동 사업의 사업비 대부분이 이월 및 불용되고 있는 한편,
빈집실태조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므로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일곱째, ‘농지관리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농지관리기금은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및 용자원금회수액 등을 재원으로
조성·운용되는 기금임.

그런데 2025년 동 기금의 지출은 1조 7,897억원에 달하는 반면,
기금 수입은 계획액 대비 77.6%인 1조 807억원에 그쳐
여유자금 운용 규모가 당초 계획액 대비 34.9%인 951억원으로
축소되었음.

이는 기금의 주요 자체수입원은 감소하는 반면,
농지 매입과 농지연금 등
정책사업에 대한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의 경우
정부내부수입을 통해 부족 재원을 보전하고 있으나,
이러한 구조는 기금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따라서 농지관리기금의 자체수입 기반을 확충하는 등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여덟째,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용자)’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동 사업은 우리 농식품산업의 해외진출과
미래 식량의 안정적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외농업
진출기업을 용자로 지원하는 사업임.

그런데, 콩·옥수수 등 전략품목 우선지원 정책에도 최근 5년간
용자기업의 국내 수입기여도는 콩 0.34%, 옥수수 0.18%에
불과하고, 밀·오일팜 등은 반입실적이 전무하며,
'24~'25년에는 용자액 전액이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집중되어
사업의 실효성과 정책자금 배분 등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별 용자의 반입성과와 비상시
대체공급능력을 검증하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사업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아홉째,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플랫폼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동 사업은 축산물 온라인경매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온라인경매 실적은 전체 경매물량의 0.51%에
그치는 등 이용실적이 저조하였음.

이는 도매시장별 거래방식과 시스템이 상이하고, 축산물의 품질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려는 거래 관행 등으로 온라인경매 참여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의 거래 특성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개선하고, 품질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거래 참여자의 수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열째, ‘축산물HACCP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하위 내역사업인 ‘집유장 및 도축장 스마트HACCP 시스템 현장구축’은 스마트HACCP 시스템을 집유장 및 도축장에 구축하는 사업임.

그런데, 동 사업은 2025년 실제 현장구축 실적이 계획대비 저조하여 실집행률이 21.8%에 불과하였음.

이는 집유장 스마트HACCP 시스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 참여가 저조하였기 때문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속히

집유장 스마트HACCP 시스템의 하자를 보완하여
이미 동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투입된 예산의 효과성을
확보하고 집행 부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해양수산부 소관>

① 총괄

□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의 총계 기준 세입 예산 및 수산발전기금의 수입 계획액은 3조 986억 4,400만원이며, 3조 622억 3,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조 9,966억 5,200만원을 수납하고 637억 8,7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 세출예산(지출계획) 규모는 총계 기준 8조 5,707억 3,800만원이며, 사업 집행과정에서 전년도 이월 등에 따른 세출예산현액은 8조 8,797억 100만원으로, 이 중 8조 3,803억 3,300만원을 지출하고, 2,289억 1,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040억 2,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2025년도 세입(수입)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수입계획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대비 수납증감 (B-A)
예 산	2,278,260	2,136,707	2,084,702	1,798	50,207	△193,558
기 금	820,384	925,530	911,950	-	13,580	91,566
총 계	3,098,644	3,062,237	2,996,652	1,798	63,787	△101,992
총수입	1,344,946	1,061,400	995,815	1,798	63,787	△351,131

* 총수입: 수입총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내부거래수입 - 보전수입

* 자료 : 해양수산부

【 2025년도 세출(지출)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출 예산액 (지출 계획액)	예산(지출)결정후 증감액				예 산 (지출) 현 액	지출액	다음 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초과 지출	예비비	이·전용				
예산	7,750,354	200,150	-	92,681	109,668 △109,668	8,043,185	7,468,383	228,148	346,653
기금	820,384	16,133	-	-	590 △590	836,517	911,950	768	157,372
총계	8,570,738	216,283	-	92,681	110,258 △110,258	8,879,701	8,380,333	228,916	504,026
총지출	6,925,412	216,283	-	89,681	110,258 △110,258	7,231,375	6,660,095	228,916	342,365

* 주: 총지출 = 지출총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내부거래지출 - 보전지출

* 자료 : 해양수산부

② 사업별 검토

□ 첫째, ‘우수해양생태계 보호’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내역사업인 갯벌 세계유산 관리사업은 갯벌 세계유산 등재에 따라 유산지역 관리를 위한 데이터 확보,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임.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위탁’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을 법정민간대행 사업(320-08)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위탁’과 ‘대행’은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점, 특정 사업을 ‘대행’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규정에 맞게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음.

□ 둘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R&D)’에 관한 사항으로,

동 사업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자체 예산 계획 수립 시 출연금보다

자체수입을 과소하게 계획하는 관행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출연금 과다 편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자체수입 초과액을 활용한 연구개발적립금이 본래 사용목적인 기관고유사업이나 연구발전사업보다 일반운영비성 지출에 사용된 사례도 발견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자체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적립금의 지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셋째,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내역사업인‘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일정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판매한 후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사업 시행이후 자치단체 경상보조 집행률이 매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집행부진의 주요 원인은 수거·반납 인프라 미흡, 보증금 선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어민들의 참여가 저조한데 기인하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순회 수거 시스템 등 회수 인프라를 확충하고

어업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넷째, ‘수급 위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내역사업인 ‘수산물 직매장 설치 및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은 대도시권에 수산물 직매장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준비가 미흡하여 집행이 저조하고, 국고보조사업이
간접보조사업자인 (주)수협유통의 가맹자 모집 수단으로
활용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보았음.

해양수산부는 사업 준비 미흡에 따른 집행 부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이
특정 법인의 가맹자 모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 설계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 다섯째, ‘수협지도경제 사업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내역사업인 ‘단위수협감사지원’은 「수협법」에 따라
단위수협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 일부를 수협중앙회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법적 성격이 위탁사업이나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예산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고보조 비율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예산과목을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정비하고, 국고지원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등
현행 제도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여섯째,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에 관한 사항으로,

내역사업인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은 온·오프라인
할인 행사를 통해 수산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사업으로,

회계연도 말 부적절한 예비비 편성·집행 문제,

「대한민국 수산대전」 인지도 부족 문제,
유통경로·단계별 어업인 소득 증대 효과 불명확 문제가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회계연도 말에 예비비를 편성·집행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대한민국 수산대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하며,

유통경로·단계별 어업인 소득 증대 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일곱째,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사업은 친환경 내항선박을
건조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 건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대 30%였던 보조율이
2025년 최대 11%로 급격히 낮아져
2025년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실적은 2척에 그쳤고,
CO2 감축 예상량도 목표 대비 42.4%에 불과하였음.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 건조를 계획하는 선사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건조 지원이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여덟째, ‘포항영일만신항(1단계)·군장항(2단계)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동 사업은 포항영일만신항 및 군장항에

방파제, 준설토투기장 등 항만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포항영일만신항(1단계)은 낙찰탈락자에게 지급할

설계보상비를 편성하지 않아 2년 연속 다른 비목에서

재원을 충당하였고, 군장항(2단계)은 공사비에 편성해야 할

설계비를 실시설계비에 편성하여 전액 불용하였음.

또한, 두 사업 모두 본공사 지연으로 당해연도 감리업무가

축소되었음에도 차년도 수행분을 포함하여

대규모 감리비 선금을 지급한 문제가 있었음.

해양수산부는 향후 일괄입찰사업의 계약구조와 단계별

재정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비목에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연도 공사 물량 및 감리업무 수행 기간을 기준으로

감리비 선금 지급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아홉째, ‘표지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내역사업인 항로표지 개량(유지보수)은

항로표지의 기능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 내역사업에는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 항로표지시설 조사

등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2,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국내여비 5,500만원 전액을 국외업무여비로 세목조정하였음.

국내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외업무여비로 조정하는
사례가 2023년부터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양수산부는 예측 가능한 국외 출장 경비는
국외업무여비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국내여비의 세목 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열재, 실집행률이 낮거나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인 ‘권역별 해양바이오 인프라 건립’,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마리나 건립사업’ 등은
보조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사업 진행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실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갯벌유산보전원 건립’사업 전액 이월,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운영비’전액 불용, 그리고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등은 대부분 법령 등에서 정한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라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 밖에 ‘진해신항’사업의 건설보상비,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사업의 기본조사설계비, ‘여객터미널 운영’사업
등의 경우 사업 추진단계, 사업 수요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대부분의 예산을 불용하였음.

해양수산부는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고려를 통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타당성 있는 사업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조속한 사전절차 이행 등을 통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농촌진흥청 소관>

1 총괄

- 2025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일반회계 등 4개 회계의 총계(총수입) 기준 세입예산액은 146억 5,700만원이고, 220억 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05억 1,4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4억 9,100만원이 발생하였음.
- 세출예산(지출계획) 규모는 총계(총지출) 기준 1조 615억 2,700만원이었으나, 사업 집행 과정에서 전년도 이월 등에 따른 예산(지출) 현액은 1조 724억 7,000만원으로 증가하여 이 중 1조 311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21억 6,000만원과 불용액 391억 8,200만원이 각각 발생하였음.

【 2025회계연도 세입(수입) 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수입계획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대비 수납증감 (B-A)
예 산	14,657	22,005	20,514	-	1,491	5,857
기 금	-	-	-	-	-	-
총 계	14,657	22,005	20,514	-	1,491	5,857
총수입	14,657	22,005	20,514	-	1,491	5,857

※ 자료: 농촌진흥청 세출

【 2025회계연도 세출(지출) 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구분	세출 예산액 (지출 계획액)	예산(지출)결정후 증감액					예 산 (지출) 현 액	지출액	다음 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 이월	초과 지출	예비비	이· 전용	기타 증감				
예산	1,061,527	10,943	-	-	28,631 △28,631	9,102 △9,102	1,072,470	1,031,128	2,160	39,182
기금	-	-	-	-	-	-	-	-	-	-
총계	1,061,527	10,943	-	-	28,631 △28,631	9,102 △9,102	1,072,470	1,031,128	2,160	39,182
총지출	1,061,527	10,943	-	-	28,631 △28,631	9,102 △9,102	1,072,470	1,031,128	2,160	39,182

* 기타증감: 내역변경, 세목변경

※ 자료: 농촌진흥청 세출

② 사업별 검토

□ 첫째, ‘농촌진흥청 소관 연구개발(R&D)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농촌진흥청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특허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통하여 연구성과가 현장으로 확산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과가 발생한 과제를 사업화 대상에 사후 편입하는 등 사업화 대상을 성과 발생 여부에 따라 조정하고, 종료과제의 사업화 성과를 별도로 조사·검증하지 않은 채 기술이전 정산자료와 참여기업의 응답 등에 의존하고 있어 성과관리의 신뢰성이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또한, 특허 활용률은 46% 수준에 정체된 반면, 장기 미활용 특허는 '21년 대비 약 30% 증가하여 특허의 사후 관리도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향후 사업화 관리대상을 사전에 확정하고, 종료과제 전체를 증빙자료로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장기 미활용 특허를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계속 보유·활용 촉진·권리 정리 등으로

관리방향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둘째,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 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은 과수 디지털농업 실증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건설사업임.

그러나, 부지 취득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채 건설보상비가
반복 편성되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편성된 12억원이
2026년 6월 말까지 집행되지 않았고,
2025년 편성액 6억원은 전액 불용되었음.

또한, 부지 취득 지연으로 설계와 착공이 늦어지면서 준공
시점도 2027년 12월에서 2030년 12월로 연기될 예정임.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향후 부지 취득의 진척도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건설보상비를 적정 규모로 편성하고,
타당성재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총사업비·사업기간과
연차별 계획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셋째, ‘파속채소연구소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동 사업은 산업적 파급력이 큰 파속채소(마늘·양파 등)의
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기술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임.

그런데, 예산확정 이전부터 주요 선행절차의 지연이 상당
부분 가시화되어 있었음에도

2025년 5월 착공을 전제로 공사비와 감리비를 편성하여
공사비는 전액, 감리비는 대부분 불용되었음.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향후 실제 사업진척도와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넷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동 사업은 농촌진흥청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하여 9개 내역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임.

그런데, 동 사업의 대표 성과지표는 ‘신품종 종자보급량’
하나로 9개 내역사업 중 1개에만 적용될 뿐,
나머지 8개 내역사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여 성과지표가
사업 전반의 성과를 측정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농촌진흥청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내역사업별로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실적이 향후
출연금의 편성에 환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산림청 소관>

① 총괄

- 2025년도 산림청 소관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의 총계 기준 세입예산액은 1조 2,641억 6,400만원이며, 1조 3,950억 1,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조 2,772억 2,800만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 4억 3,600만원과 미수납액 1,173억 4,900만원이 각각 발생하였음.
- 2025년도 산림청 소관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의 총계 기준 세출예산액은 3조 6,329억 2,6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등에 따른 예산현액은 4조 3,933억 4,100만원이며, 이 중 4조 1,206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1,507억 2,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19억 6,1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년도 세입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대비 수납증감 (B-A)
	본 예산	추경(A)					
예 산	1,146,020	1,264,164	1,395,013	1,277,228	436	117,349	13,064
기 금	-	-	-	-	-	-	-
총 계	1,146,020	1,264,164	1,395,013	1,277,228	436	117,349	13,064
총수입	427,463	427,463	551,178	433,393	436	117,349	5,930

※ 주: 총수입 = 수입총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내부거래수입 - 보전수입

※ 자료: 산림청

【 2025년도 세출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출 예산액	예산 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추경	예비비	이·전용				
예산	3,632,926	74,424	685,990	-	124,121 △124,121	4,393,341	4,120,657	150,723	121,961
기금	-	-	-	-	-	-	-	-	-
총계	3,632,926	74,424	685,990	-	124,121 △124,121	4,393,341	4,120,657	150,723	121,961
총지출	2,616,930	74,424	467,021	-	124,121 △124,121	3,158,376	2,914,590	150,723	93,061

※ 주: 총지출 = 지출총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내부거래지출 - 보전지출

※ 자료: 산림청

② 사업별 검토

□ 첫째, ‘산림공간정보기반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내역사업인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축’은 공간정보(GIS) 기반의 과학적인 산림관리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동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의무 대상임에도, 감리기준에 반하여 감리비 예산요구 없이 불확실한 낙찰차액을 재원으로 감리를 계획하고, 실제 낙찰차액이 300만원에 불과하여 당초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을 감리비로 배정하여 감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감리계약은 사업 계약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체결되는 등 부실한 감리추진이 확인되었음.

따라서 산림청은 감리의무 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감리비를 본예산에 반영하고, 감리용역을 사업 초기부터 계획·발주함으로써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품질관리와 사업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둘째, ‘농림위성융합 지능형 산림특화정보기반연구(R&D)’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내역사업인 ‘농림위성 지능형 산림정보 활용기반 구축 연구’의 2025년도 연구장비 구입비 48억 2,100만원 중 집행잔액 11억 8,653만원을 자체 재배정하여 집행하면서 8억 8,150만원(20건)은 연말인 11월 및 12월에 집행하였음.

그러나 동 사업의 집행 절차를 보면 과제 종료 시점인 11~12월에는 과제평가와 평가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고, 동 사업으로 진행된 2025년 연구과제 13건의 계약도 모두 10월 또는 11월에 연구 종료 및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어, 연말 구입 장비들이 당해연도 연구수행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따라서 산림청은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시 연간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과제 종료 시점에 임박하여 연구장비 구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전 점검 및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셋째, ‘산불방지대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산림청은 ‘고정익항공기 물탱크’ 및 ‘고성능 산불방지도론’ 도입 사업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부실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미흡한 사업계획으로
두 사업 모두 사업추진이 무산되었음.

특히, 고정익항공기 물탱크 도입 사업은 관련 예산이 2년간
반복적으로 편성되었음에도 도입되지 못하고 예산의 편성
및 불용이 반복되었고, 고성능 산불방지드론 사업은
추경예산을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전용하여
다른 용도로 집행함으로써 국회의 추경 심의 및 의결
취지에 반하는 부적절한 사례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산림청은 추경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와 계획 수립을 강화하여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집행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의 추경 편성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해양경찰청 소관>

① 총괄

- 2025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계 기준 70억 2,800만원이었으나, 실제로는 453억 3,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416억 4,300만원(91.9%)이 수납되었고, 1,4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으며, 36억 7,800만원(8.1%)은 미수납되었음.
- 세출예산 규모는 총계 기준 1조 9,922억 6,5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02억 7,900만원과 추가경정예산 3억 1,500만원을 증액한 예산현액은 2조 28억 5,900만원으로, 이 중 1조 9,539억 4,300만원 (97.6%)이 집행되었고, 262억 8,900만원(1.3%)이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으며, 226억 2,700만원(1.1%)은 불용되었음.

【 2025년도 세입 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세입예산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예산대비수납증감 (B-A)
7,028	45,335	41,643	14	3,678	34,615

※ 자료: 해양경찰청

【 2025년도 세출 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세출 예산액	예산(지출)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 이월	예비비	이체	전용	이용	추경				
1,992,265	10,279	-	-	3,390	2,851	315	2,002,859	1,953,943	26,289	22,627
				△3,390	△2,851					

※ 자료: 해양경찰청

② 사업별 검토

□ 첫째,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

해양경찰청의 2025회계연도 미수납 채권 금액은 총 36억 7,800만원으로, 이 중 51%에 달하는 18억 7,700만원이 5년 이상 장기 체납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장기 체납 채권과 관련하여 사망이 확인된 체납자에 대한 상속인 파악·재산조회 등 「국가채권 관리법」상 채권 관리 절차가 대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불납결손 처리 기준도 관서별로 상이하여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사망 체납자에 대한 상속인 파악·재산조회 등 법령상 절차가 빠짐없이 이행되도록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불납결손 처리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전 관서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등 채권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둘째, ‘해양경비지원시스템구축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동 사업은 AIS·레이더·위성 등 감시자산으로부터 수집된 선박신호 등을 융합·분석하는 AI 기반 해양경비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7억 4,000만원 중 4억 9,3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2,200만원이 이월, 1억 2,500만원이 불용되었음.

해양경찰청은 당초 해양경비지원시스템에 연계할 선박 데이터의 범위를 국내에서 획득한 선박 신호·제원 데이터만으로 협소하게 설정하였다가 4년차인 2025년에야 세계 선박 데이터 연계를 사업에 새로 포함하면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시스템의 유지보수 계약 체결까지 늦어져 2025년 1월부터 약 10개월간 정식 유지보수 계약 없이 시스템이 운영되었음.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정보화 사업 기획 단계에서 사업 목표·대상·범위를 충분히 조사·분석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구축사업과 유지보수 사업의 일정을 연계 관리함으로써 국가 중요 정보시스템의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셋째, ‘해양사고 신속대응 군집수색 자율수중로봇 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동 사업은 해양사고 발생 시 다수의 자율수중로봇을 투입해 신속한 수중수색을 수행하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진행되었음.

그런데 해당 연구개발과제는 해양사고 신속대응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최종성과물에 해양경찰청의 활용을 전제로 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까지 포함되어 있어 공공의 이익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고, 개발기술이 향후 감시·정찰 등 국가안보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어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국가가 소유할 필요가 충분함에도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이 연구개발기관에 귀속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되었음.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협약 변경 절차 등을 통해 본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귀속 여부를 충실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넷째, ‘탄소중립 해상환경 변화에 따른 방제대응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해양경찰청은 방제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친환경 선박 연료 누출을 현장에서 신속히 감지할 수 있는 간이센서를 개발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당초 LNG·메탄올·암모니아·수소 4종을 탐지 대상으로 계획하였음.

그러나 사업비가 중도에 50% 감액 편성되면서 이를 암모니아·수소 2종으로 축소하였는데, 전 세계 친환경 선박

중 LNG 추진선이 암모니아·수소 추진선을 압도적으로
초과하는 등 방제 현장에서 실제 노출 위험이 높은 연료는
LNG임에도 상용화 수준이 낮은 암모니아·수소를 탐지
대상으로 선정하여 방제작업자 안전 확보라는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향후 R&D 사업 추진 시 연구 범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연구 대상의 선정 기준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선정 근거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도록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4. 대체토론의 요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양곡관리비 조작관리비의 보관료 및 가공료 예산이 부족하여 연례적으로 예산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시 단가를 현실화하여 반영할 것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여곡 제도의 신청자격, 시장에 미치는 영향, 현장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의 필요성 여부를 점검할 것
-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경정예산 8,000억원 중 3,800억원을 불용하였으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
-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 편성 시 일률적으로 25%의 목표 가입률을 적용하였으나, 예산의 58.8%를 내역변경하여 집행하지 못했으므로 예산편성의 정확도를 제고할 것
-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실효행률이 2.7%에 불과하므로 집행부진을 개선할 것

-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사업추진 일정과 실제영농일정이 맞지 않아 사업 포기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일정을 개선할 것
- 축사시설현대화개선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해양수산부 소관>

- 해양관광인프라 조성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마리나 항만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지방비 확보 미흡 등으로 연례적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실현 가능한 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추가적인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관계부처 협의 및 지자체 관리·감독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 해양경계 획정관리 사업은 근거 법률 통과 지연에 따라 관련 예산을 전액 불용하였는바, 향후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후 예산을 편성할 것
- 김 건조기 교체 사업은 2025년 추경으로 편성(60억원)된 사업으로, 지방비 확보 지연, 사업대상자 선정 지연 등의 사유로 2025년에 실제 집행된 금액은 8억 4,000만원에 불과하였고, 추경 편성의 주요 목적이었던 물김 수급 안정 및 가공능력 확충 효과 역시 상당 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은 어업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증대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유통경로·단계별 어업인 소득 증대 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CPTPP 가입과 관련하여 수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국산 수산물 피해, 면세유 지원 감축,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압력에 대한 어민의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교통약자 승하선 편의시설 사업은 수요 검토와 설계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었으므로 수요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이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사업은 보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지원 척수가 저조하였으므로 보조율과 지원 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
-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은 보조금의 연례적인 이월·재이월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여 이월·재이월을 방지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할 것

<농촌진흥청 소관>

-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기반구축 사업은 '25년 집행률이 3.3%에 그쳤고 불용액의 98.5%가 부지취득 지연으로 미집행된 건설보상비이며, 동 보상비는 '24~'26년 3개 연도에 걸쳐 12억 원이 편성되었음에도 '26년 6월말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전무하므로, 농촌진흥청은 타당성재조사 결과와 부지취득 조건을 반영하여 총사업비·사업기간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재정비하는 한편, 사업지연 등으로 인한 예산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과 추진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
- 파속채소연구소 구축(R&D) 사업은 예산 편성 당시 연내 착공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착공을 전제로 공사비를 편성하여 52억 5,2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고, 사전 검토 미흡 등으로 집행률도 '23년 80.7%에서 '25년 54.0%로 계속 하락하고 있으므로, 농촌진흥청은 관계기관 협의 일정을 구체화한 사업관리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대규모 시설사업은 부지 적정성·인허가 가능성 등을 예산 편성 전에 면밀히 검토할 것
-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R&D)은 '25년 집행률이 69.8%에 그친 가운데, 연내 착공이 곤란한 상황에서 공사비 341억 8,800만원을 편성하여 그 80.9%가 타 비목으로 전용·조정되고

본공사는 착수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회계연도 종료 이틀 전 175억 3,000만원을 위탁기관 계좌로 전용·이체하고도 실제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농촌진흥청은 사업 추진여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집행이 어려운 공사비를 과다 편성하거나 집행실적을 왜곡하는 방식의 예산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산림청 소관>

- 산림청은 고정익항공기 물탱크 및 고성능 산불방지드론 도입 등 신규 특수장비 도입 등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시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사전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할 것
- 산림청은 실제 헬기 제작 및 행정 소요 기간을 반영하여 당초 사업 기간을 현실성 있게 4년으로 조정하고, 합리적인 연부율 산정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사업비의 연례적인 이월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 설계를 고도화할 것
-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임도시설 계약 중 84.6%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고, 수의계약이 임도 부설시공과 연관성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있으므로 임도시설 사업의 경쟁입찰 비중을 확대하고, 계약관리와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
- 임야에서 매실, 단감을 재배하는 생산자는 농업경영체와 임업경영체 모두 등록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매실과 단감 생산자에 대한 경영체 등록 방안을 마련할 것

<해양경찰청 소관>

- 해양경찰청은 대규모 건설사업 수행 시 전문직렬 인력의 배치 또는 외부 전문인력 활용을 통해 사업이 적법하게 관리·감독되도록 개선 조치를 마련할 것
- 해양경찰청은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자체양성과정에 소요되는 국외교육여비를 사업 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함으로써 자체양성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반영하여 함정 및 항공기가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것

5. 소위심사보고의 요지

우리 소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

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의 결산과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184건의 시정요구사항과 총 2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음.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내역사업 간 예산을 변경

하여 과도한 홍보비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57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고,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대규모 이월금 누적 시 차기 보조금 교부 및 이월 승인을 제한하여 연례적인 이월·재이월을 방지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76건의 시정요구사항과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음.

또한 농촌진흥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여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집행이 어려운 공사비를 과다 편성하거나

당초 목적과 다르게 대규모 전용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9건의 시정요구사항과 3건의 부대의견을,

산림청에 대해서는

신규 특수장비 도입 등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시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 절차를 강화하여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29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음.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에 대해서는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 시 관급자재 미반영 등 계약 법령 위반사

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13건의 시정요구사항과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음.

6. 심사결과

-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7.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1)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 총 184 건(결산·예비비 합계)

(단위: 건)

부 처 명	변 상	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중 복)	합 계
농림축산식품부	-	-	-	4	53	-	57
해양수산부	-	-	-	10	66	-	76
농촌진흥청	-	-	-	1	8	-	9
산림청	-	-	-	4	25	-	29
해양경찰청	-	-	-	-	13	-	13
합계	0	0	0	19	165	-	184

(2) 시정요구사항(결산)

가. 농림축산식품부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국외업무여비 전용 후 반복적 불용 발생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농업협상대응(5031-301)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역사업인 ‘협상단 경비지원’의 국외업무여비로 1억 8,000만원을 자체전용(증)하여 3억 9,000만원에서 5억 7,0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나, 집행액은 3억 6,100만원으로 본예산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2억 900만원이 불용되어 동 내역사업 불용액의 67.9%를 차지함. - 세부적으로는 16건의 출장·협상 일정이 취소·연기·서면협의·영상대응 또는 국내개최 등으로 전액 미집행되었고, 1건은 일부 일정이 취소되어 계획 대비 총 2억 600만원이 미집행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외업무여비 전용 전 예정 출장을 확정·유력·잠정 수요로 구분하여 회의 개최와 대표단 구성이 확정된 출장수요를 중심으로 필요한 최소 금액만 단계적으로 전용하고, 전용 심사 시 잔여 회계연도, 협상·회의의 취소 및 온라인 전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 집행 가능성을 엄격히 검토하여 연말 일괄 전용에 따른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국제기구 분담금 반복적 미납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기구분담금(5031-530) · 국제기구분담금(ODA)(5031-531)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국제기구분담금은 회원국 지위에 따른 의무적경비임에도 다수의 국제 기구에서 차년도 납부 또는 장기 미납이 반복되고 있음. - 특히 '25년 7월 국제설탕기구(ISO)가 미납 분담금 9,780파운드에 대해 표결권 제한 가능성을 직접 통보하였음에도 회계연도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등 미흡한 분담금 관리로 인해 국제기구 내 권리가 제약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기구별 고지시기, 납부기한, 미납 시 불이익, 예상 외화 소요액을 포함한 연간 납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결권 · 피선거권 제한 가능성이 있는 분담금은 우선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납부기한 이전 집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다른 국제기구의 분담금 감소에 따른 일시적 재원 여유로 전년도 미납액을 해소하는 방식에 의존하지 말고 반복 미납을 예방할 구조적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3	해외농업자원개발 인턴사업의 정책성과 재평가 필요	관련사업명	농지관리기금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보조)(5032-30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해외농업자원개발 인턴사업’의 정책적 의의는 참여자가 종료 이후 해외농업 분야에 취업 · 정착하였는지에 있으나, 2021~2025년 참여자 총 45명 중 2026년 6월 말 현재 같은 지원기업에 재직 중인 인원은 6명(13.3%)에 불과하여 현행 사업방식이 진출기업의 안정적 인력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인턴사업 참여자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정책성과를 재평가하고, 사업 참여자 선정 시 해외농업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의지가 있는 참여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참여자 평가 요소 등을 강화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사업의 실효성 재검토 및 지원체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지관리기금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5032-302)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전략품목에 정책자금을 우선 배분하여 융자 비중이 '23년 0%에서 '25년 100%로 확대되었음에도, 융자지원기업의 국내반입량은 2021~2025년 전체 수입량 대비 콩 0.34%, 옥수수 0.18%에 그치고, 밀·카사바·오일팜의 반입실적은 전무함. - 반입실적도 5년간 한 번이라도 융자받은 기업의 반입량 합산인 결과, 개별 융자의 순증성과와 비상시 대체공급 물량의 확인이 어려움. ○ 지원대상도 최근 2년 융자액 127억원 전액이 대·중견기업에 지원되었고, '25년에는 중소기업이 담보 부족으로 포기하여 2순위인 대기업에 10억원이 지원됨. ○ 아울러, '24·'25년 융자액이 AK사의 호주·러시아 및 러시아 콩·옥수수 사업에 집중되어 진출지역 다변화라는 종합계획 방향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융자건별로 지원 이전의 확보량·국내반입량을 기준선으로 설정해 지원 이후의 순증 성과와 비상시 반입 가능성을 검증하고, 반복·후속 지원 시 종전 융자의 성과를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등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배제되지 않도록 참여 수단을 검토하고, 기업·국가·품목별 누적지원액과 집중도를 점검하여 지원 대상을 다변화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연구용역과제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와 중복 문제	관련사업명	일반회계-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운영(7033-341)	제도개선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지적사항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연구용역 추진 시 관계부처 연구과제와의 중복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기관의 설립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한편, 연구계획 수립과 발주 시기를 개선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홍보사업의 필요성과 규모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안)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관계부처와의 중복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설립 목적에 맞는 과제를 선정하며, 연구계획과 발주 시기를 개선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홍보사업의 필요성과 규모를 적절히 점검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빈집 등록·거래 관련 사업의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4160-448)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빈집을 매물로 등록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독점적·사적인 사업영역에 해당하며, 공인중개사는 거래 성사 시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내역사업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활동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빈집의 등록·거래를 추진하는 방식은 타당성이 미흡함. ○ 또한 동 사업은 2025년 신규 편성되었으나 실집행률이 2.7%에 그치고 있는 동시에 빈집 등록실적도 당초 목표에 크게 미달하였는데, 실제 지출 원인에 비해 과도한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빈집 밀집 지역과 사업 참여지역 간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실질적인 빈집 등록·거래 활성화와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가 필요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빈집 등록·거래 관련 사업이 공인중개사의 독점적인 사업영역에 해당하고 단순히 빈집만을 대상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사업을 개선하며, 향후 결산에 이월 특례조항을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빈집이 많은 고위험 지역의 사업 참여 제고 등 빈집은행의 실질적인 거래 활성화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농촌유희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사업의 사업포기에 따른 예산 불용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농촌유희시설활용지역활성화(세종) (4160-30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세종시의 ‘농촌유희시설활용지역활성화’ 사업은 편성된 예산 3억 6,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으므로, 예산 편성 및 사업의 실제 추진 가능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유희시설활용지역활성화’ 사업 추진 시 사업포기로 예산 전액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가능성과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8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실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배정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일반농산어촌개발(4180-36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비를 교부하는 시점에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실제 공사 진행 및 대금 지급은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 공사에 유보된 이월액이 2025년 기준 7,710억원에 달하는 등 이월규모가 과다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2025년 기준 유보된 이월액이 7,710억원에 달하므로, 실제 공정률과 집행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 및 배정 방안을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귀농귀촌정착지원 대출자금 연체율 증가에 따른 정착 지원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업자금이차보전(1038-301)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귀농귀촌정착지원 대출자금’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연체율: (‘21) 0.82%→(‘22) 0.85%→(‘23) 0.96%→(‘24) 1.24%→(‘25) 1.67%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인의 경영 안정 및 상환능력 제고를 위해 영농컨설팅 및 판로 지원 등 정착 지원과 사후 관리를 강화할 것		
10	피해품목 예측 정확도 제고 및 지원대상품목 선정 방식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피해보전직불(1072-392)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피해보전직불’은 피해품목 예상 및 조사분석 등 과정에서 예측 정확도가 떨어져 예산의 불용 및 부족이 반복되고 있음. - (‘23) 193억원 불용, (‘24) 54억원 예산초과로 인한 기금운용계획변경, (‘25) 217억원 불용 ○ 또한 2025년은 녹두 1개 품목만 선정하면서 집행액이 예산현액 218억 6,600만원의 0.6%인 1억 3,900만원에 그치는 등 지원 실적이 저조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원대상 품목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고, 지원대상품목 선정 시 피해 인정 범위를 보다 폭넓게 검토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실집행 실적을 고려한 예산 반영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1120-30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2025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272억원이 불 용된데 이어, 사업을 총괄하는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서도 지방비 매 칭분을 포함하는 352억원이 불용되는 등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음.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의 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실제 현장의 소요액을 반영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		
12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에 따른 지역농협 재정 부담 완화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촌고용인력지원(1140-333)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를 직접 고용하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협 1개소당 1억원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담(주당 35시간 임금 보장, 4대 보험료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2025년 운영 농협 90개소 가운데 40개소(44.4%)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농 협중앙회의 조합상호지원자금 지원을 제외할 경우 2025년 농협 1개소당 평균 손실은 3,280만원 수준으로 보고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가동률 제고, 이용료 현실화, 유�휴 인 력 발생 시 손실 보전 체계 도입, 국비 지원액 확대 등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에 따른 지역농협의 재정 부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실집행률 제고 및 임시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촌고용인력지원(1140-333)	주의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은 전체 실집행률이 30.8%로 전반적으로 사업 집행 실적이 저조하며, 특히 산청(0.9%)·영천(2.1%)·안성(6.1%) 등 일부 지역의 실집행률이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세부 실집행률 부진 사업지를 대상으로 공사 지연의 원인을 규명하여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숙사 완공 전까지 농촌 이주노동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임시 거처 지원 및 냉난방 대책을 병행 추진할 것		
14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의 사업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농지관리기금-맞춤형농지지원(융자)(1160-35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 사업은 지출전 사전협의 지연, 사업대상지 선정 지연, 토지보상 절차 지연, 실시설계 지연 등으로 당초 2025년 완료 예정이었던 부지 기반공사가 약 1년 이상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농업법인의 스마트팜 시설 착공 및 청년농 지원 개시 일정도 2027년 이후로 지연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내 부지조성이 완료되도록 공사를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스마트팜 시설 착공과 청년농 지원 등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적정 수요를 반영한 농지연금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농지관리기금-농지연금(융자)(4130-41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안 편성 시점에 확인 가능한 당해연도 가입실적 및 담보농지 가격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농지연금 사업비를 자체변경을 통해 당초 계획대비 8.4~15.3% 수준으로 증액해 왔음. - ' 25년 신규 가입자 평균 월지급금은 166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 기준인 139만 2,000원 대비 19.6%임. ○ 그러나 농지연금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급을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신규 가입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 ' 26.6월 기준 1,770명이 예산 부족으로 대기 중인 것으로 보고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예산 편성 시 전년도말 통계뿐만 아니라 예산안 작성 시점까지 확보된 월별 가입실적, 신규 가입자 월지급액, 담보농지 가격 추이 및 가입 유지 건수를 반영하여 사업비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신규 가입이 제한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수검편의 대책 마련 및 검진 대상 연령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4135-397)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2023~2024년 국정감사 지적으로 검진 대상 연령이 기존 51~70세에서 51~80세로 확대되었으나, 청·장년층 여성농업인의 조기 질환 예방 수요(50세 미만)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 ○ 예산 규모는 2022년 19억 9000만원에서 2025년 65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나, 2025년 지자체 실집행률은 68.2%에 불과하여 17억 4,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함. - 2025년 계획 검진인원 5만 명 중 실제 수검인원은 36,806명(달성률 73.6%)에 그쳐 사업 집행 관리가 미흡함. ○ 의료접근성 취약지역의 검진기관 부족 및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검진 희망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수검 편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50세 미만 청·장년층 여성농업인까지 검진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일률적 농기계 임대료 감면의 재검토 및 차등 지원체계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농기계임대(1067-30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코로나19 대응으로 한시 도입된 임대료 50% 감면이 2026년 말까지 유지되면서 한시적 재난 대응수단이 사실상 상시적 영농비 지원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농가의 경영규모·소득·연령 등 지원 필요성과 무관하게 일률 적용되어 재정지원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또한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적자구조에 있어 감면 장기화 시 유지보수·노후장비 교체 등 운영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24년 및 '25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상 기준임대료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되어 지역별 농가 부담과 지원 수준의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일률적 50% 감면의 지속 필요성과 법적 근거를 재검토하고,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영세농·고령농·재해피해농가 등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농가를 중심으로 감면 혜택을 집중하거나 농가 여건별 차등 감면체계를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8	집행 상황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및 이월 발생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1067-333)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설계 등 선행절차 지연으로 연내 착공이 불가능해 대규모 이월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국비 85억 6,6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전북 김제시)에 4차례에 걸쳐 전액 교부함에 따라, 실집행률은 13.1%에 그치고 81억 800만원이 대규모로 이월되었으며, '26년 6월 말 기준 누적 실집행률 및 공정률 또한 각각 32.7%, 5%에 머물러 있음.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대규모 건설사업의 예산 요구·편성 시 총사업비 협의, 기본·실시설계, 설계적정성 검토, 발주·계약 및 착공 등 주요 선행절차가 반영된 통합공정표를 기초로 연차별 실제 집행가능액을 산정할 것 ○ 국고보조금 교부 시에도 설계 완료, 총사업비 확정, 공사계약 체결 및 기성 발생 등 주요 사업단계와 연계하여 교부시기와 규모를 조정함으로써 대규모 이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잔여 사업의 단계별 일정을 철저히 점검·관리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다각화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1150-344)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 25년 예산 304억 8,5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으나, 고용증감률은 14.3%로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 사업들의 평균(34.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임금 수준도 이들 사업의 평균보다 낮아, 고용 발생 여부 중심의 성과지표만으로는 일 자리의 질을 평가하기 어려움. ○ 참여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 21년 48.9% → ' 24년 35.7% → ' 25년 36.5%로 하락 후 정체되었음에도, ' 24~' 26년 성과목표가 매년 35%로 동일하게 설정되어 기존 실적 수준만 유지해도 목표가 달성되는 구조이고, ' 25년 동 사업 참여자 중 청년 층(15~34세)은 29.8%(94명)에 그치고 있음.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원기업의 성과를 단순 고용 유지·창출 여부가 아니라 고용 증감률, 임금 수준, 일정 기간 생존율, 매출 증가기업 비중 등으로 다각화하여 관 리하고, 신규 창업 촉진사업은 청년층의 참여 현황을 별도로 점검하며 청년 예비 창업자의 발굴·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20	친환경농자재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성과지표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친환경농자재지원(자율)(2271-302)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친환경농자재(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논과 밭에 각각 다른 목적의 토양개량제를 공 급하고 있음에도 성과지표가 밭토양 산도에만 편중되어 있어 논·밭의 특성과 공급 목 적을 반영한 별도의 성과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논·밭의 특성과 공급 목적을 정확히 반영한 별도의 성과지표를 마 련해 사업 효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기술료 법정 사용비율 미준수 반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연구개발(R&D) 사업 공통 - 기술료 관리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은 정부지분기술료의 60% 이상을 참여연구자 보상금에, 15% 이상을 기술이전·사업화 등에, 10% 이상을 성과활용 기여직원 보상금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최근 3년간 참여연구자 보상금 사용비율은 47.6%·43.3%·49.5%로 종전 법정기준인 50%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성과활용 기여직원 보상금 사용비율도 6.2%·8.3%·4.2%로 법정기준인 10%를 지속적으로 밑돌고 있음. - 2021~2025년 적용대상 계약 502건 중 334건(66.5%)이 법정 사용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여 미달액이 13억 7,911만원에 이르고, 미준수 334건의 발생사유 또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 보상금 관련 용도를 통합하면서 그 하한을 70% 이상으로 정한 개정 시행령(' 27. 1. 1. 시행)을 적용하더라도, 최근 3년간 보상금 합계는 53.8%·51.6%·53.7%로 16.2~18.4%p 미달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기술료가 법정 사용비율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실태에 대한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미준수가 반복되는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편성 정확도 제고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업재해보험(1031-30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업수입안정보험은 2025년 예산 2,078억 1,700만원 중 집행액은 791억 8,800만원으로 예산액의 38% 수준에 불과함. - 예산액의 58.8%인 1,222억 6,600만원을 다른 내역사업인 농작물재해보험(1,151억 5,900만원)과 가축재해보험(71억 700만원)으로 내역변경 하였음. ○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 편성 당시 본사업으로 전환된 9개 품목 전체에 일률적으로 가입률 25% 수준을 적용한 결과, 실제 품목별 평균 가입률은 14.2%에 그침 -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농가 자부담금은 ha당 40.7만원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자부담금(9.9만원) 대비 4.1배 수준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 편성 시 품목별 과거실적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의 사업성과를 명확히 파악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23	재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복구지원 체계 개편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재해대책비(1033-302)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 25년 당초 예산은 전년대비 57%수준인 1,6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7·8 및 9월 집중호우로 인해 재난지원금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106억원 가량을 전용(증)하였고, 실 집행 과정에서 74억원이 불용되었음. ○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가 다양해지고 그 피해 또한 심해지는 상황에서 예산규모를 축소할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의 다양화 및 피해 심화에 대응하여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생산비 지원 확대 등 복구지원 체계 개편을 통해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공익기능증진직불(1071-302)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2025년 바이오차 투입 실집행 물량은 예산 편성 물량 5,265ha 대비 3,134ha(59.5%)에 그쳤으며, 2024년에도 1,480ha(28.1%)에 불과하는 등 2년 연속 예산 편성 물량에 미달하고 있음. ○ 바이오차 시중가격은 2025년 kg당 1,967원, 2026년 2,026원으로 상승한 반면 정부 지원단가는 kg당 1,820원 수준임. ○ 사업대상자 선정과 물량공급이 3월 하순부터 시작되는 현행 일정은 실제 영농 일정과 맞지 않아 사업 포기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바이오차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성과제고를 위해 사업 일정 개선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며, 저메탄사료 단가 현실화 효과 모니터링 및 질소저감사료 분석등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의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25	저탄소 농축산물인증제 사업의 신뢰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2240-312)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고시로 운영되고 있어 조건 위반 시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음.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취득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인증제 참여 농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농가에 대해서는 일부 비용 부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농가에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등 지원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6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 예산을 연차별 계획에 맞게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전통발효식품육성(2832-31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 사업은 실집행률이 저조함. - ‘충북 괴산’은 예산 21억 2,900만원 중 14억 9,500만원(실집행률 70.2%)을, ‘전북 고창’은 11억 8,500만원 중 1억 1,500만원(실집행률 9.7%)을, ‘전남 해남’은 18억 7,300만원 중 4억 3,300만원(실집행률 23.1%)을 각각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연차별 계획에 맞게 불필요한 변경이나 지연없이 추진할 것		
27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차별화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식품산업인프라강화(2832-38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식품판로지원’ 내역사업으로 추진되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 제도와 ‘농촌경제활성화지원(4130-300)’ 사업의 ‘농촌융복합혁신거점 조성’ 내역사업에서 추진되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제도는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을 융합하기 위한 사업자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제도의 취지와 지원내용(판로확대 및 금융지원)이 유사하고 지원대상이 중복되고 있는바, 중 복지원 및 재정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 2025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으로 48개 사업자가 신규로 지정되었는데, 23개 사업자(47.9%)가 이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사 제도 간의 지원대상 및 내용이 중복되는 상황을 점검 하고, 중복 지원 배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8	복수의 보조사업자가 동일사업을 중복 추진하는 방식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2835-406)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일한 내용의 해외인증취득 지원사업을 2개 보조사업자를 통하여 각각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신청창구에 따라 경쟁률과 선정 가능성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 운영체계 중복으로 인한 예산집행상 비효율이 발생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2개 보조사업자가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 추진을 지양해야 하며, 각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 사업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		
29	식품가공원료 매입사업의 이월액 과다	관련사업명	농산물가격안정기금-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2851-345)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식품가공원료 매입’ 내역사업의 예산을 200억원 증액하였으나, 편성시 기존 예산의 집행가능성과 실제 자금 수요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증액예산 규모의 46.3%인 92억 6,5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됨. -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시급성과 연내집행 가능성을 무시한 추경 편성임.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식품가공원료매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용등급이나 담보능력 등 기본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업체를 선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연내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0	전략작물산업화 사업의 과도한 홍보비 집행 재발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전략작물산업화(2131-351)	주의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전략작물가공확대지원’의 예산 46억 8,700만원을 ‘식량작물선도경영체육성’으로 내역변경하여 방송·인플루언서 홍보에 편당·건당 1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홍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회성·고비용 홍보에 예산을 집행한 것은 국산 밀·콩·가루쌀의 실질적·지속적 소비 확대라는 정책 목적에 비추어 과도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역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경우 당초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별도 사업을 실시하거나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홍보비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홍보비 집행의 효과성을 검토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1	국가공가공단지의 사업관리 철저 및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전략작물산업화(2131-351)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2025년 신규 도입된 내역사업인 ‘국산콩 가공산업화 지원’ 사업은 지방비 확보, 설계 및 인허가 절차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업 추진 전 사업 준비와 집행계획 검토가 미흡하여 예산 32억원 중 7억 9,400만원만 집행행하여 집행행률이 24.8%에 불과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조한 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해 단계별 이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지연과 과도한 이월을 방지하고, 국산콩의 가격경쟁력과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를 위한 가공업체 연계 및 판로 확대 방안을 병행할 것		
32	가뭄대비용수개발 사업 배정기준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뭄대비용수개발(4031-304)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가뭄우려지역 용수개발지원 사업’의 경우 가뭄 우려지역에 긴급급수대책비, 대형관정 개발비 등을 지원할 때 예산 배정기준에서 벼 재배농가가 제외되고 있음.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우려지역에 예산을 배정할 때 벼 재배농가를 제외하는 등 재배작물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는 현행 예산 배정기준을 폐지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3	연례적 전용 방지를 위한 정부양곡 조작관리비 예산 현실화 및 예산편성 기준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양곡관리특별회계-정부양곡관리비(2131-366)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정부양곡관리비 조작관리비 예산 편성 기준단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대규모 예산 전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2022년 235억 3,900만원에서 2025년 818억 6,300만원으로 증가함. - 보관료의 예산 편성 기준단가는 1일·톤당 197원이었으나 실제 평균 지급단가는 256.3원이었으며,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저온창고에 61.7%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도 예산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 또한 정부가 고품질화를 위해 S등급 도정공장을 육성하여 실제 가공물량의 63.2가 S등급에서 처리되고 있으나, 가공료 예산은 A등급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되고 있음. ○ 한편 연례적으로 수백억 규모의 예산을 전용 또는 세목조정하여 부족분을 집행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46조의 취지에 반하는 소지가 있음.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양곡관리비 조작관리비 예산 편성 시 실제 집행단가, 저온창고 보관비용, 도정공장 등급별 실제 가공물량 등을 반영하여 기준단가를 현실화하고, 예산 부족에 따른 연례적인 대규모 예산 전용 또는 세목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4	국가소유를 명시한 과제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기후변화대응지능형농업기반관리기술개발(R&D)(2280-53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연구관리전담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연구성과의 국가소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이로 인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 또한 동 사업은 2025년 착수되어 2030년 이후 현장 적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이미 개발·실증한 물관리 기술과의 기술이전·공동 활용 가능성을 적극 강구하여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현장 적용을 조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안)	○ 국가 예산으로 개발된 기술을 공공부문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 소유권을 개선하고,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이미 개발한 물관리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공동 이전을 추진하여 저수지 등에 대한 현장 적용 시기를 앞당길 것		
35	축산발전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축산발전기금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2025년 기준 축산발전기금의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총자산은 1조 5,374억원이나 차입부채가 1조 3,105억원에 달해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85.2%에 달하며, 순자산은 2,269억원으로 전년(3,899억원) 대비 1,630억 6,000만원(41.8%) 감소함. ○ 6개 용자사업의 실집행액 합계는 3,575억 9,200만원으로 계획액 대비 실집행률은 80.3%이며, 878억 6,6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불용된 금액이 당해연도 이자 상환액인 377억 4,800만원의 2배를 초과하는 수준임.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용자)은 78.3%, 가축분뇨처리지원(용자)은 57.3%, 조사료생산기반확충(용자)은 49.5%에 그쳤으며, 말산업육성지원(용자)은 사업포기로 실집행액이 전무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용자 예산을 편성하고, 용자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축산발전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6	친환경축산직불의 실적부진 요인 점검 및 농가 직접 지원예산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공익기능증진직불(1071-302)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친환경축산직불제는 지급단가와 지원한도를 확대하였음에도 당초 예산 34억 6,000만원 중 17억 2,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49.7%에 그쳤음. ○ 친환경축산협회를 통한 교육·컨설팅 사업은 6억 2,500만원의 예산 중 소비기반 확대에 3억 2,600만원, 소비자 연계형 행사 및 콘텐츠 제작에 1억 4,100만원, 매거진 발행 등 홍보에 2,300만원 등이 집행된 반면, 실질적인 경영컨설팅은 친환경축산농장 및 방목생태축산농장 등 4개소를 지원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축산직불제 지급요건 미충족원인과 축종별 참여 격차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축산협회를 통한 교육·컨설팅 사업은 농가 직접 지원 중심으로 구조를 개편하도록 노력할 것		
37	자조금 거출실적과 정부 보조금 지원 비율 연계 및 집행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축산발전기금-축산자조금(3731-302)	주의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축산자조금 중 사슴자조금으로 편성된 예산 8,000만원 중 2,150만원을 자체 계획변경을 통해 닭고기자조금으로 집행함. - 예산편성과 다른 자조금 집행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 ex) 22년 닭고기·계란 → 한우 9.53억원 24년 오리→한우·한돈 2.88억원 ○ 특정 축종 농가들의 거출 실적 저조로 인한 잔여 예산을 정부가 임의로 인기 축종에 없어주는 것은 자조금법 취지를 훼손하며, 자조금 단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조금 거출 실적과 정부 보조금 지원 비율을 연계하고, 특정 축종의 집행잔액을 다른 축종의 지원에 집행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8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축사시설현대화(3760-332 · 346)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동사업은 축산으로의 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5년도 본예산과 2차 추경을 통해 총 1,709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본예산 1,559억 1,700만원 중 48.5%만 집행되고 나머지 465억 2,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112억 1,900만원이 불용처리됨.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자연재난 발생,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및 착공 지연에 따라 이월이 발생했고, 사업 중도포기 및 취소에 따른 불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축사 전환에 필요한 축사 증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허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9	축사시설개선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축사시설현대화(3760-332 · 346)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축사시설현대화의 내역사업인 축사시설개선사업(용자)은 당초 679억 4,600만원 에서 추경예산 224억원 및 자체변경 52억 7,300만원을 통해 계획현액 1,106억 1,900만원 중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한 집행액은 574억 9,600만원으로 집행률이 52%이며, 실집행액은 351억 4,600만원(실집행률 31.8%)에 불과하여 내역변경 및 추경으로 증액한 금액을 집행하지 못하였음. (단위: 백만원, %) <table><tr><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이 · 전용</th><th rowspan="2">예비비</th><th rowspan="2">예산 현액 (A)</th><th rowspan="2">집행액 [실집행액] (C)</th><th rowspan="2">집행률 (C/A)</th><th rowspan="2">실집행률 (C/A)</th><th rowspan="2">다음년도 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r><tr><th>본예산</th><th>추경</th></tr><tr><td>67,946</td><td>90,346</td><td>15,000</td><td>5,273</td><td>-</td><td>110,619</td><td>57,496 [35,146]</td><td>52</td><td>31.8</td><td>46,529</td><td>6,594</td></tr></table>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 · 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A)	집행액 [실집행액] (C)	집행률 (C/A)	실집행률 (C/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67,946	90,346	15,000	5,273	-	110,619	57,496 [35,146]	52	31.8	46,529	6,59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 · 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A)	집행액 [실집행액] (C)	집행률 (C/A)	실집행률 (C/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67,946	90,346	15,000	5,273	-	110,619	57,496 [35,146]	52	31.8	46,529	6,594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사시설개선사업의 집행 특성과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40	사업포기에 따른 예산 불용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축산발전기금-말산업육성지원 (3733-321)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2025회계연도 말산업육성지원 용자사업은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사업의 2년차 사업 포기로 인해 예산현액 11억 2,000만원 중 5억 2,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46.4%에 그쳤음. ○ 사업 추진 중 사업포기가 발생하면서 집행부진이 발생한 만큼 사업 추진상황과 집행가능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지원 용자사업에서 사업포기로 인한 예산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상황과 집행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1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이 낮은 사업 추진 문제 및 시장 여건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산물가격안정기금-비축지원(3031-323)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콩 수급안정을 이유로 국산 대두 수매량을 확대(3만톤→5만톤) 하기 위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02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동 사업 예산현액 중 619억 7,400만원을 불용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낮았던 것으로 보임. ○ 또한 정부의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 등 논콩 생산 확대 정책에 따라 콩 생산량이 확대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수매를 증대하여 비축재고가 증가하였고, 누적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할인행사 등을 실시하여 예산이 3중으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임.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적자국채 발행 등을 동반하는 예산 편성 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하여 부적절한 예산 반영을 원천 차단할 것 ○ 농림축산식품부는 논콩 생산 확대 정책으로 정부 비축재고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밀·콩 등 전략작물을 논에 심도록 장려하는 사업을 시장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 면적으로 축소하거나 생산 중심에서 수요 기반의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등 전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2	국회 심의권을 훼손하는 사업변경 납용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농산물가격안정기금-비축지원(3031-323)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기금은 예산에 비해 집행상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되나, 프로그램이 다른 ‘종자수매·공급(6435-334)’ 사업으로 40억원을 자체변경한 것은 국회의 심의권을 훼손한 것임.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금이라 할지라도 국회 심의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사업변경 납용을 방지할 것		
43	사전 검토 부족으로 인한 예산 불용 재발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농산물가격안정기금-비축지원(3031-323)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강원농산물비축기지 구축’ 사업은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결과 예산현액의 82.8%가 불용됨. - 2025년 예산현액 33억 900만원 중 2억 8,300만원만 집행되고 27억 3,900만원이 불용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이 불용되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4	관리감독 미흡에 따른 지연공시 발생 방지 위한 제재조치 필요	관련사업명	농산물가격안정기금-자조금지원(3031-325)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2025년 의무자조금단체가 법정 공시기한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관리·감독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임. ○ 또한 자조금단체 운영실적 평가계획 중 공시의무 미이행의 감점이 가장 낮은 수준인 1점에 불과하여 법정기한 내 공시를 유도하기 어려움.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의무자조금단체가 법정 공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미이행 단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엄정히 적용하며,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감점 수준을 강화하고 반복적·장기 미이행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감액·지원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연계할 것		
45	산지유통종합자금 신규 물량 확보 및 비저장 품목 지원 방식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산물가격안정기금-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3033-304)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2025년 노지채소 신규 계약물량이 계약재배 실적의 1.1%에 불과하여 신규 산지조직의 사업 진입 여지가 제한되고, 노지채소 계약재배 실적 중 대파·양배추·고추가 전체의 7.2%에 불과하여 가격 급등락이 반복되는 품목에 대한 수급조절 기능이 제한적임.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규 산지조직이 진입할 수 있는 물량을 별도로 확보하고, 대파·고추 등 저장이 어려운 품목의 계약재배가 확대되지 않는 원인을 산지조직이 부담하는 채고·가격변동 위험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장을 전제하지 않는 지원 방식을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6	공영도매시장시설 현대화 용자사업의 공사순연에 따른 예산 불용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용자)(3033-311)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총사업비 조정 협의절차 이행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공사가 순연되면서 ' 25년 편성된 예산 24억원을 전부 불용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용자 사업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 절차 및 실제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순연에 따른 예산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47	공영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의 공사순연에 따른 예산 불용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3033-33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총사업비 조정 협의 등으로 공사가 순연되면서 예산현액 152억원 중 92억 7,100만원만 집행하여 집행률이 61%에 불과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영도매시장현대화사업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절차와 공사 추진일정을 면밀히 관리하여 공사순연으로 인한 예산 불용을 최소화 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8	집행부진 반복에도 동일 규모 예산 편성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3033-33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상품화지원 확대’는 3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중 30억 4,500만원의 경우 기존 사업의 완공 일정이 반영되지 않고 편성됨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고, 나머지 예산 5억 5,000만원도 설계 전 법적 행정절차 지연으로 전액 이월되어 2025회계연도 예산액을 전액 실행하지 못함. ○ 한편 동 사업은 2026년도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집행부진의 원인 규명 없이 전년대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음. - 특히 대상 시장의 신청 현황 및 미신청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가 제시되지 않아, 편성규모가 3개소로 선정된 근거와 실제 수요 간 차이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음.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상품화지원 확대 사업의 예산 규모를 기 추진 사업의 완공 일정과 신규 신청 수요 등을 반영하여 편성할 것		
49	검역·예찰 필수경비의 연례적 예산 전용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식물검역검사및수출촉진(6232-30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외래 식물병해충 및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 병해충 발생·증가에 따라 예찰조사와 검역현장 출장 소요가 늘면서 예산 전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외래 병해충 발생 빈도 증가와 검역 수요 확대는 이미 상시화된 위험 요인임에도, 이를 본예산에 적정 수준으로 예측·반영하지 못하고 매년 전용하여 충당하는 비효율적 재정 운용이 지속되고 있음.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고위험 외래병해충 발생 및 검역 수요 증가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장 검역·예찰에 필요한 필수 경비의 예측 정확도를 제고하고, 이를 예산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연례적인 예산 전용 관행을 개선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0	R&D 과제의 경쟁성 확보 및 종료과제 성과 활용조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R&D)(6234-30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신규 공모 연구과제의 단독응모 비율이 2021~2025년 기준 63.2%(95개 중 60개)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참여제한 요인 점검과 공고 방식·자격요건 등의 개선이 필요함. ○ 종료과제에 대한 사업화·활용성과 조사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아 2020~2025년 종료과제 394개 중 379개(96.2%)가 사업화 여부 미조사 상태이고, 종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2020~2022년 과제 189개 중 175개(92.6%)도 성과 추적조사가 미실시되었음. - 성과가 확인된 15개 과제의 사업화 금액 7억 8,400만원도 기술이전 계약·약정 금액에 해당할 뿐 제품화·매출 등 후속성과는 파악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신규 공모 연구과제의 단독응모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참여 제약 요인을 점검하고 공고방식·자격요건 등을 개선하는 한편, 종료과제의 활용성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와 미조사 과제에 대한 소급 조사 계획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경쟁성과 성과 활용관리를 강화할 것		
51	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한국농수산물대학교교육운영(책임운영)(1110-30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한국농수산물대학교교육운영(책임운영)’ 사업은 국외업무여비 부족, 인건비 부족 등을 사유로 연례적으로 예산을 전용·조정하고 있음.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물대학교와 함께 사전 예측이 가능한 인건비 및 여비 등 사업별·비목별 소요를 정밀하게 추계하여 당초 예산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2	과수 무병묘목 보조금 교부 시 사전 검토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과수무병묘목 생산공급지원(6432-305)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국립종자원은 무병 모수포 조성을 위해 5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2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 25년 실집행률이 40.0%에 그쳤음. ○ 특히 상주시·문경시·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4,000만원을 교부받고도 실집행이 전무하여, 지방비 확보 및 계약·착공 등 선행절차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교부하여 보조금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		
		시정요구(안)	○ 국립종자원은 향후 지방비 확보와 계약·착공 등 선행절차 및 기교부액의 집행 상황을 점검한 후 보조금의 교부 여부와 시기를 조정하는 등 사업시행주체의 대규모 이월·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강화할 것		
53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수입의 잔액 관리 근거규정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반려동물 산업육성(3741-344)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잔액 관리와 관련하여, 2025년 1억 5,100만원 중 5,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함. -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 등에 잔액의 관리·이월·사용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통해 응시수수료 수입 잔액을 관리하고 있음.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수입의 잔액 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4	보조금 분리교부 및 보호동물 입양률 제고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3740-310)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동물보호센터 신축·증축 사업의 실행률은 2022년 23.1%, 2023년 36.5%, 2024년 39.2%, 2025년 49.0%에 불과하고 이월액도 2023년 66억 2,400만원, 2024년 67억 1,500만원, 2025년 52억 1,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0~60% 수준임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의 보조금을 연초에 전액 교부한 문제가 있음. ○ 또한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의 입양률이 2022년 27.5%, 2023년 24.2%, 2024년 23.5%로 3년 연속 하락하고 있고 지역별 편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센터의 수용률이 100%를 초과하거나 근접하여 포화 상태가 이어지는 등 수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을 연초에 전액 교부하지 말고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차수를 나누어 교부할 것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 확충과 홍보를 통한 보호동물 입양률을 제고하고 입양률이 낮은 지역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할 것		
55	사업추진 여건 관리 및 점검 미흡에 따른 실행 부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축사체처리지원(3940-341)	주의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가축매몰지 관리·소멸'은 고병원성 AI, ASF 가축 매몰지의 사후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4억 8,000만원이 지자체로 교부되었으나 실행률은 6억 2,200만원(41.1%)로 매우 저조하였음. - 지자체별 실행률 편차도 커서 경기 55.4%, 강원 37.3%의 실행률을 보인 반면, 전남은 10.7%, 전북은 6.7%라는 매우 낮은 실행률을 기록함. -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1박 2일 단기 행사인 방역 대회에서 단순 사례 공유 수준에만 그쳤을 뿐, 실행 부진 지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원인 규명이나 점검 및 환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별 실행 부진 원인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의 매몰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산 분할 교부 체계를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자체수입의 정확한 추계 및 연구개발적립금 집행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한국해양과학기술원운영지원(R&D)(1110-30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연례적으로 자체수입을 과소 계획하여 출연금이 과다 편성될 우려가 있고, 연구개발적립금으로 기관고유사업이나 연구발전 사업보다는 인사·운영제도 개선, 소모성 비품 구입비 일반운영비성 지출을 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 2021~2025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자체수입 계획 및 수납 현황 】 (단위: 백만원)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2021</th><th colspan="2">2022</th><th colspan="2">2023</th><th colspan="2">2024</th><th colspan="2">2025</th></tr><tr><th>계획</th><th>수납</th><th>계획</th><th>수납</th><th>계획</th><th>수납</th><th>계획</th><th>수납</th><th>계획</th><th>수납</th></tr><tr><td>정부출연금</td><td>90,443</td><td>89,712</td><td>85,510</td><td>84,469</td><td>82,989</td><td>82,669</td><td>87,843</td><td>86,658</td><td>90,403</td><td>89,585</td></tr><tr><td>자체수입</td><td>74,135</td><td>112,912</td><td>78,793</td><td>121,877</td><td>81,876</td><td>119,511</td><td>81,189</td><td>115,206</td><td>84,534</td><td>128,515</td></tr><tr><td>기타</td><td>26,606</td><td>26,606</td><td>31,543</td><td>31,543</td><td>28,935</td><td>28,935</td><td>12,265</td><td>12,265</td><td>11,334</td><td>11,334</td></tr><tr><td>합계</td><td>191,184</td><td>229,230</td><td>195,846</td><td>237,889</td><td>193,800</td><td>231,115</td><td>181,297</td><td>214,129</td><td>186,271</td><td>229,434</td></tr></table> * 자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획	수납	계획	수납	계획	수납	계획	수납	계획	수납	정부출연금	90,443	89,712	85,510	84,469	82,989	82,669	87,843	86,658	90,403	89,585	자체수입	74,135	112,912	78,793	121,877	81,876	119,511	81,189	115,206	84,534	128,515	기타	26,606	26,606	31,543	31,543	28,935	28,935	12,265	12,265	11,334	11,334	합계	191,184	229,230	195,846	237,889	193,800	231,115	181,297	214,129	186,271	229,434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획	수납		계획	수납	계획	수납	계획	수납	계획	수납																																																																						
정부출연금	90,443	89,712	85,510	84,469	82,989	82,669	87,843	86,658	90,403	89,585																																																																						
자체수입	74,135	112,912	78,793	121,877	81,876	119,511	81,189	115,206	84,534	128,515																																																																						
기타	26,606	26,606	31,543	31,543	28,935	28,935	12,265	12,265	11,334	11,334																																																																						
합계	191,184	229,230	195,846	237,889	193,800	231,115	181,297	214,129	186,271	229,434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정부 출연금이 적정 규모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 요구·편성 단계에서부터 자체수입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연구개발적립금 재원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 성격의 지출을 지양하는 등 당초 목적에 맞도록 집행을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극지연구소 사업 성과관리체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극지연구소 운영지원(R&D)(1110-301)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수” 인데 이는 극지연구소와 무관한 별도 사업의 고용 실적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쇄빙연구선 운항과 남·북극 과학기지 운영, 극지 연구 수행 등을 담당하는 극지연구소 활동과 관련성이 부족함.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극지연구소 운영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연구 항해 일수와 총 운항일수 대비 연구항해 비율, 남·북극 과학기지 운영·보급 실적 등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 활동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고유 지표로 대체하고, 그 목표치는 최근 실적과 기관 중장기 운영계획을 감안하여 설정하는 등 출연사업 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해양수산과학기술 진흥원의 해양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2031-312)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해양수산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교부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범위 조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규정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상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범위에는 창업·사업화 직접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률상 진흥원의 설립목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기획·관리·평가 지원’임. * ① 타깃기업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 ②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③ 민간투자기반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 및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해양관광인프라 조성사업 실집행 부진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해양관광육성(2034-31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해양관광인프라조성사업은 예산 실집행률이 33.7%에 불과하고 재이월액이 지속 발생하는 등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심각하며, 특히 시급성이 요구되는 추정 반영 사업 2건*은 2025년 실집행률이 0%에 그쳐, 지자체 교부 이후 예산 집행 관리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여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조성사업 10억원, 울산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 10억원 【 해양관광인프라 조성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table><tr><th rowspan="3">목</th><th rowspan="3">세목</th><th rowspan="3">사업시행 주체 (기관명)</th><th colspan="3">부처</th><th colspan="10">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th></tr><tr><th colspan="2">예산</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교부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예산 현액</th><th rowspan="2">집행액 (B)</th><th colspan="2">전년도 이월액 재외</th><th rowspan="2">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h rowspan="2">실집행률 (C/A)</th></tr><tr><th>본예산</th><th>추경 (A)</th><th>예산 현액</th><th>집행액 (C)</th></tr><tr><td rowspan="9">330</td><td rowspan="9">03 (자자)</td><td>부산광역시</td><td>3,148</td><td>3,148</td><td>3,148</td><td>3,148</td><td>5,458</td><td>8,606</td><td>7,531</td><td>3,148</td><td>2,073</td><td>1,075</td><td>-</td><td>87.5</td></tr><tr><td>경기도</td><td>-</td><td>-</td><td>-</td><td>-</td><td>2,826</td><td>2,826</td><td>1,965</td><td>-</td><td>-</td><td>861</td><td>-</td><td>69.5</td></tr><tr><td>충청남도</td><td>500</td><td>500</td><td>500</td><td>500</td><td>980</td><td>1,480</td><td>553</td><td>500</td><td>500</td><td>927</td><td>-</td><td>37.4</td></tr><tr><td>경상남도</td><td>6,525</td><td>6,525</td><td>6,525</td><td>6,525</td><td>6,839</td><td>13,364</td><td>9,765</td><td>6,525</td><td>4,525</td><td>3,599</td><td>-</td><td>69.3</td></tr><tr><td>경상북도</td><td>4,815</td><td>4,815</td><td>2,888</td><td>2,888</td><td>3,341</td><td>6,229</td><td>2,400</td><td>2,888</td><td>1,000</td><td>3,829</td><td>-</td><td>20.8</td></tr><tr><td>전라남도</td><td>8,253</td><td>9,253</td><td>9,253</td><td>9,253</td><td>3,088</td><td>12,341</td><td>3,661</td><td>9,253</td><td>573</td><td>8,680</td><td>-</td><td>6.2</td></tr><tr><td>강원특별자치도</td><td>500</td><td>500</td><td>500</td><td>500</td><td>-</td><td>500</td><td>-</td><td>500</td><td>-</td><td>500</td><td>-</td><td>-</td></tr><tr><td>제주특별자치도</td><td>2,920</td><td>2,920</td><td>2,920</td><td>2,920</td><td>660</td><td>3,580</td><td>1,640</td><td>2,920</td><td>992</td><td>1,940</td><td>-</td><td>45.8</td></tr><tr><td>울산광역시</td><td>-</td><td>1,000</td><td>1,000</td><td>1,000</td><td>-</td><td>1,000</td><td>-</td><td>1,000</td><td>-</td><td>1,000</td><td>-</td><td>-</td></tr><tr><td colspan="2">소 계</td><td>26,661</td><td>28,661</td><td>26,734</td><td>26,734</td><td>23,192</td><td>49,926</td><td>27,515</td><td>26,734</td><td>9,663</td><td>22,411</td><td>-</td><td>33.7</td></tr><tr><td colspan="2">총 계</td><td>26,661</td><td>28,661</td><td>26,734</td><td>26,734</td><td>23,192</td><td>49,926</td><td>27,515</td><td>26,734</td><td>9,663</td><td>22,411</td><td>-</td><td>33.7</td></tr></table> * 자료: 해양수산부														목	세목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재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330	03 (자자)	부산광역시	3,148	3,148	3,148	3,148	5,458	8,606	7,531	3,148	2,073	1,075	-	87.5	경기도	-	-	-	-	2,826	2,826	1,965	-	-	861	-	69.5	충청남도	500	500	500	500	980	1,480	553	500	500	927	-	37.4	경상남도	6,525	6,525	6,525	6,525	6,839	13,364	9,765	6,525	4,525	3,599	-	69.3	경상북도	4,815	4,815	2,888	2,888	3,341	6,229	2,400	2,888	1,000	3,829	-	20.8	전라남도	8,253	9,253	9,253	9,253	3,088	12,341	3,661	9,253	573	8,680	-	6.2	강원특별자치도	500	500	500	500	-	500	-	500	-	500	-	-	제주특별자치도	2,920	2,920	2,920	2,920	660	3,580	1,640	2,920	992	1,940	-	45.8	울산광역시	-	1,000	1,000	1,000	-	1,000	-	1,000	-	1,000	-	-	소 계		26,661	28,661	26,734	26,734	23,192	49,926	27,515	26,734	9,663	22,411	-	33.7	총 계		26,661	28,661	26,734	26,734	23,192	49,926	27,515	26,734	9,663	22,411	-	33.7
		목	세목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재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330	03 (자자)	부산광역시	3,148	3,148	3,148	3,148	5,458	8,606	7,531	3,148	2,073	1,075	-	87.5																																																																																																																																																																																					
		경기도	-	-	-	-	2,826	2,826	1,965	-	-	861	-	69.5																																																																																																																																																																																					
		충청남도	500	500	500	500	980	1,480	553	500	500	927	-	37.4																																																																																																																																																																																					
		경상남도	6,525	6,525	6,525	6,525	6,839	13,364	9,765	6,525	4,525	3,599	-	69.3																																																																																																																																																																																					
		경상북도	4,815	4,815	2,888	2,888	3,341	6,229	2,400	2,888	1,000	3,829	-	20.8																																																																																																																																																																																					
		전라남도	8,253	9,253	9,253	9,253	3,088	12,341	3,661	9,253	573	8,680	-	6.2																																																																																																																																																																																					
		강원특별자치도	500	500	500	500	-	500	-	500	-	500	-	-																																																																																																																																																																																					
		제주특별자치도	2,920	2,920	2,920	2,920	660	3,580	1,640	2,920	992	1,940	-	45.8																																																																																																																																																																																					
		울산광역시	-	1,000	1,000	1,000	-	1,000	-	1,000	-	1,000	-	-																																																																																																																																																																																					
소 계		26,661	28,661	26,734	26,734	23,192	49,926	27,515	26,734	9,663	22,411	-	33.7																																																																																																																																																																																						
총 계		26,661	28,661	26,734	26,734	23,192	49,926	27,515	26,734	9,663	22,411	-	33.7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연례적인 집행부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 실집행 부진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해양관광육성(2034-31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은 대부분 지역의 실집행률이 30~40%대에 그치는 등 집행 부진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제주 서귀포·전남 보성·충남 보성(실집행률 30 ~ 40%), 경남 창원·울산(실집행 없음) 【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의 연도별 실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 <table><tr><th>지역</th><th>연도</th><th>교부액</th><th>교부 현액*(A)</th><th>집행액 (B)</th><th>실집행률 (B/A)</th></tr><tr><td rowspan="7">제주 서귀포</td><td>2019</td><td>1,000</td><td>1,000</td><td>997.5</td><td>99.8</td></tr><tr><td>2020</td><td>2,000</td><td>2,003</td><td>1,081</td><td>54.0</td></tr><tr><td>2021</td><td>3,400</td><td>4,321</td><td>3,453</td><td>80.0</td></tr><tr><td>2022</td><td>5,440</td><td>6,308</td><td>408</td><td>6.5</td></tr><tr><td>2023</td><td>3,200</td><td>9,100</td><td>1,258</td><td>13.8</td></tr><tr><td>2024</td><td>2,040</td><td>9,492</td><td>9,221</td><td>97.1</td></tr><tr><td>2025</td><td>2,920</td><td>3,580</td><td>1,640</td><td>45.8</td></tr><tr><td rowspan="6">전남 보성</td><td>2020</td><td>1,000</td><td>1,000</td><td>400</td><td>40.0</td></tr><tr><td>2021</td><td>2,000</td><td>2,600</td><td>2,428</td><td>93.4</td></tr><tr><td>2022</td><td>2,500</td><td>2,672</td><td>260</td><td>9.7</td></tr><tr><td>2023</td><td>1,800</td><td>4,196</td><td>1,875</td><td>44.7</td></tr><tr><td>2024</td><td>1,410</td><td>3,597</td><td>507</td><td>14.1</td></tr><tr><td>2025</td><td>8,253</td><td>11,341</td><td>3,661</td><td>32.3</td></tr><tr><td rowspan="3">충남 보령</td><td>2023</td><td>1,000</td><td>1,000</td><td>-</td><td>-</td></tr><tr><td>2024</td><td>1,000</td><td>2,000</td><td>1,020</td><td>51.0</td></tr><tr><td>2025</td><td>500</td><td>1,480</td><td>553</td><td>37.4</td></tr><tr><td rowspan="3">경북 경주</td><td>2023</td><td>1,000</td><td>1,000</td><td>1,000</td><td>100</td></tr><tr><td>2024</td><td>1,000</td><td>1,000</td><td>1,000</td><td>100</td></tr><tr><td>2025</td><td>500</td><td>500</td><td>500</td><td>100</td></tr><tr><td>경남창원</td><td>2025</td><td>2,000</td><td>2,000</td><td>-</td><td>-</td></tr><tr><td>울산</td><td>2025</td><td>1,000</td><td>1,000</td><td>-</td><td>-</td></tr></table> * 전년도 이월액 포함 * 자료: 해양수산부			지역	연도	교부액	교부 현액*(A)	집행액 (B)	실집행률 (B/A)	제주 서귀포	2019	1,000	1,000	997.5	99.8	2020	2,000	2,003	1,081	54.0	2021	3,400	4,321	3,453	80.0	2022	5,440	6,308	408	6.5	2023	3,200	9,100	1,258	13.8	2024	2,040	9,492	9,221	97.1	2025	2,920	3,580	1,640	45.8	전남 보성	2020	1,000	1,000	400	40.0	2021	2,000	2,600	2,428	93.4	2022	2,500	2,672	260	9.7	2023	1,800	4,196	1,875	44.7	2024	1,410	3,597	507	14.1	2025	8,253	11,341	3,661	32.3	충남 보령	2023	1,000	1,000	-	-	2024	1,000	2,000	1,020	51.0	2025	500	1,480	553	37.4	경북 경주	2023	1,000	1,000	1,000	100	2024	1,000	1,000	1,000	100	2025	500	500	500	100	경남창원	2025	2,000	2,000	-	-	울산	2025	1,000	1,000	-	-
		지역	연도			교부액	교부 현액*(A)	집행액 (B)	실집행률 (B/A)																																																																																																																	
제주 서귀포	2019	1,000	1,000	997.5	99.8																																																																																																																					
	2020	2,000	2,003	1,081	54.0																																																																																																																					
	2021	3,400	4,321	3,453	80.0																																																																																																																					
	2022	5,440	6,308	408	6.5																																																																																																																					
	2023	3,200	9,100	1,258	13.8																																																																																																																					
	2024	2,040	9,492	9,221	97.1																																																																																																																					
	2025	2,920	3,580	1,640	45.8																																																																																																																					
전남 보성	2020	1,000	1,000	400	40.0																																																																																																																					
	2021	2,000	2,600	2,428	93.4																																																																																																																					
	2022	2,500	2,672	260	9.7																																																																																																																					
	2023	1,800	4,196	1,875	44.7																																																																																																																					
	2024	1,410	3,597	507	14.1																																																																																																																					
	2025	8,253	11,341	3,661	32.3																																																																																																																					
충남 보령	2023	1,000	1,000	-	-																																																																																																																					
	2024	1,000	2,000	1,020	51.0																																																																																																																					
	2025	500	1,480	553	37.4																																																																																																																					
경북 경주	2023	1,000	1,000	1,000	100																																																																																																																					
	2024	1,000	1,000	1,000	100																																																																																																																					
	2025	500	500	500	100																																																																																																																					
경남창원	2025	2,000	2,000	-	-																																																																																																																					
울산	2025	1,000	1,000	-	-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행정절차와 현장 장애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점검 체계를 대폭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해양관광육성(2034-31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자원조사·통계구축 등 기초단계에만 머물러 있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적 기반 구축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전문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해양수산부의 적극적 조치 미흡으로 자격제도 도입이 지연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 전문자격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체계적인 예산 지원 방안을 수립·이행할 것		
9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6133-310)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는바, - 내역사업인 외국적 크루즈선 기항확대 사업은 영업·상담 대비 실제 기항 전환율 등 실질적 기여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없고, 국내 크루즈 수요 확대 사업 중 크루즈 체험단 운영은 연간 100명 규모의 단순 경비 보조에 그치고 있어 사업목적 및 효과달성 여부가 의문이며, 매체 홍보 예산 일부(900만원)를 부적절하게 전용하는 등 예산 집행의 정합성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기항 전환율 등 실제 ‘외국적 크루즈선 기항 확대’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도입하고, 크루즈 체험단 사업은 저변 확대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실증되지 않을 경우 폐지 또는 개편하는 한편 매체 홍보 효과 측정 체계를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해양공간 통합관리 사업 근거 법률 제정 전 예산 편성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해양공간 통합관리(1031-305)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해양경계 획정관리 사업은 법안 의결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여 행정권한의 적법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였음. - 추진 근거 법률* 통과 지연에 따라 획정 대상 해역 기초자료조사 예산 9.5억원을 전액 불용하였으며, 2024년에는 13억원을 편성하여 기본·추진계획 수립 및 시범조사에 12.3억원을 집행한 바 있음. *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493)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향후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후 예산을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갯벌 세계유산 관리 사업의 법정민간대행사업 비목 변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우수해양생태계 보호(1031-31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갯벌 세계유산 관리 사업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위탁 규정만 존재함에도 법정민간대행 형식으로 해양환경공단에 전담시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 추진 방식임. - 동 사업은 법정민간대행사업(320-08)으로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 근거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에는 해당 업무를 특정 공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부재함.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갯벌 세계유산 관리 사업을 현행 규정에 맞게 비목을 변경하여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예산편성 전 침물선탁 잔존유 확인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해양오염 사고 방지(1036-306)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침물선탁 관리사업의 2025년 예산은 61억 8,500만원이지만, 실집행액은 31억 100만원으로 집행률이 50%에 그치며, 32%인 19억 7,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이는 동 사업에 따라 잔존유 회수 작업이 계획된 침물선탁 2척 중 1척에서 ‘잔존유 없음’이 확인되어 편성된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예산 편성에 앞서 침물선탁별 잔존유 적재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조사 결과 잔존유 회수 불필요 선탁 발생 시 후순위 선탁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등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5067-301)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2025년 옥계·사천 사업의 경우 사전 예측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실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 동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법령 개정 및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매년 사업이 순연되어 설계·건축 공사비의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 * 옥계 시설(강릉시)이 도시관리계획에 누락되어 있음을 뒤늦게 확인하여 건축허가·착공 지연 ** 옥계·사천 지역의 2025년 공사 예산(46억 8,200만원) 중 60.3%(28억 2,100만원)가 집행되고 남은 금액은 이월 【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의 연도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table><tr><th>연도</th><th>대상지</th><th>구분</th><th>예산현액</th><th>집행액</th><th>이월액</th><th>이월 사유</th></tr><tr><td rowspan="2">2021</td><td rowspan="2">목포·마산·광양</td><td>설계</td><td>900</td><td>615</td><td>285</td><td>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행정 처리기간 소요</td></tr><tr><td>소계</td><td>900</td><td>615</td><td>285</td><td></td></tr><tr><td rowspan="4">2022</td><td rowspan="2">목포·마산·광양</td><td>설계</td><td>285</td><td>285</td><td>-</td><td>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행정 처리기간 소요</td></tr><tr><td>건축</td><td>17,400</td><td>512</td><td>16,888</td><td>항만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후 인허가 절차 진행으로 순연</td></tr><tr><td rowspan="2">평택·통영</td><td>설계</td><td>600</td><td>471</td><td>129</td><td>항만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후 인허가 절차 진행으로 순연</td></tr><tr><td>소계</td><td>18,285</td><td>1,268</td><td>17,017</td><td>후속 인허가에 소요되는 집행비용 이월</td></tr><tr><td rowspan="4">2023</td><td rowspan="2">목포·마산·광양</td><td>건축</td><td>16,888</td><td>16,888</td><td>-</td><td>집행잔액 반납</td></tr><tr><td>설계</td><td>129</td><td>128</td><td>-</td><td>집행잔액 반납</td></tr><tr><td rowspan="2">평택·통영</td><td>건축</td><td>11,600</td><td>4,531</td><td>7,069</td><td>항만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후 인허가 절차 진행으로 순연</td></tr><tr><td>설계</td><td>318</td><td>236</td><td>82</td><td>후속 인허가에 소요되는 집행비용 이월</td></tr><tr><td rowspan="4">2024</td><td rowspan="2">서귀포·군산</td><td>소계</td><td>28,935</td><td>21,783</td><td>7,151</td><td>집행잔액 반납</td></tr><tr><td>건축</td><td>7,069</td><td>6,826</td><td>-</td><td>집행잔액 반납</td></tr><tr><td rowspan="2">평택·통영</td><td>설계</td><td>82</td><td>3</td><td>-</td><td>집행잔액 반납</td></tr><tr><td>소계</td><td>315</td><td>271</td><td>-</td><td>집행잔액 반납</td></tr><tr><td rowspan="4">2025</td><td rowspan="2">서귀포·군산</td><td>건축</td><td>5,129</td><td>2,898</td><td>2,230</td><td>설계 보완 및 인허가 절차 진행으로 순연</td></tr><tr><td>소계</td><td>12,595</td><td>9,998</td><td>2,230</td><td>집행잔액 반납</td></tr><tr><td rowspan="2">옥계·사천</td><td>건축</td><td>2,230</td><td>2,229</td><td>-</td><td>집행잔액 반납</td></tr><tr><td>설계</td><td>4,682</td><td>2,821</td><td>1,861</td><td>건축허가 결정 지연에 따른 절차 지연</td></tr><tr><td rowspan="2">완도·진해</td><td>소계</td><td>219</td><td>216</td><td>3</td><td>2차년도 설계 추진을 위한 이월</td></tr><tr><td>소계</td><td>7,131</td><td>5,266</td><td>1,864</td><td></td></tr></table> * 사업시행주체(해양환경공단)의 이월액·불용액임 * 자료: 해양수산부					연도	대상지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 사유	2021	목포·마산·광양	설계	900	615	285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행정 처리기간 소요	소계	900	615	285		2022	목포·마산·광양	설계	285	285	-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행정 처리기간 소요	건축	17,400	512	16,888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후 인허가 절차 진행으로 순연	평택·통영	설계	600	471	129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후 인허가 절차 진행으로 순연	소계	18,285	1,268	17,017	후속 인허가에 소요되는 집행비용 이월	2023	목포·마산·광양	건축	16,888	16,888	-	집행잔액 반납	설계	129	128	-	집행잔액 반납	평택·통영	건축	11,600	4,531	7,069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후 인허가 절차 진행으로 순연	설계	318	236	82	후속 인허가에 소요되는 집행비용 이월	2024	서귀포·군산	소계	28,935	21,783	7,151	집행잔액 반납	건축	7,069	6,826	-	집행잔액 반납	평택·통영	설계	82	3	-	집행잔액 반납	소계	315	271	-	집행잔액 반납	2025	서귀포·군산	건축	5,129	2,898	2,230	설계 보완 및 인허가 절차 진행으로 순연	소계	12,595	9,998	2,230	집행잔액 반납	옥계·사천	건축	2,230	2,229	-	집행잔액 반납	설계	4,682	2,821	1,861	건축허가 결정 지연에 따른 절차 지연	완도·진해	소계	219	216	3	2차년도 설계 추진을 위한 이월	소계
연도	대상지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 사유																																																																																																																							
2021	목포·마산·광양	설계	900	615	285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행정 처리기간 소요																																																																																																																							
		소계	900	615	285																																																																																																																								
2022	목포·마산·광양	설계	285	285	-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행정 처리기간 소요																																																																																																																							
		건축	17,400	512	16,888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후 인허가 절차 진행으로 순연																																																																																																																							
	평택·통영	설계	600	471	129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후 인허가 절차 진행으로 순연																																																																																																																							
		소계	18,285	1,268	17,017	후속 인허가에 소요되는 집행비용 이월																																																																																																																							
2023	목포·마산·광양	건축	16,888	16,888	-	집행잔액 반납																																																																																																																							
		설계	129	128	-	집행잔액 반납																																																																																																																							
	평택·통영	건축	11,600	4,531	7,069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후 인허가 절차 진행으로 순연																																																																																																																							
		설계	318	236	82	후속 인허가에 소요되는 집행비용 이월																																																																																																																							
2024	서귀포·군산	소계	28,935	21,783	7,151	집행잔액 반납																																																																																																																							
		건축	7,069	6,826	-	집행잔액 반납																																																																																																																							
	평택·통영	설계	82	3	-	집행잔액 반납																																																																																																																							
		소계	315	271	-	집행잔액 반납																																																																																																																							
2025	서귀포·군산	건축	5,129	2,898	2,230	설계 보완 및 인허가 절차 진행으로 순연																																																																																																																							
		소계	12,595	9,998	2,230	집행잔액 반납																																																																																																																							
	옥계·사천	건축	2,230	2,229	-	집행잔액 반납																																																																																																																							
		설계	4,682	2,821	1,861	건축허가 결정 지연에 따른 절차 지연																																																																																																																							
완도·진해	소계	219	216	3	2차년도 설계 추진을 위한 이월																																																																																																																								
	소계	7,131	5,266	1,864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향후 완도, 진해 등 후속 사업지에 대해 공사 계약 및 건축허가 등 필수 법적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체계를 정례화하여 목표기간인 2027년까지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해양쓰레기 실태조사 사업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수산발전기금-해양폐기물정화사업(1065-301)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해양쓰레기 실태조사의 성과지표는 단순 ‘전국 수거량’에만 치중되어 있어, 외국 기인 폐기물의 지역별 집중도나 유입 경로 등 재정 지원에 필요한 정책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발생지 및 원인자 특징이 어려운 해양폐기물의 특성상 유입지역 지자체가 수거·처리 비용을 전담하는 불합리한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수거량 보다는 지역별 정확한 유입 실태 파악이 중요함.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실태조사 시 외국 기인 폐기물의 종류, 지역별 발생 및 집적량, 주요 유입경로를 면밀히 조사·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 기인 폐기물 부담이 집중되는 지역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 필요성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8	단위수협감사지 원 사업 예산 비목 변경 및 국고 지원 수준의 적정성 여부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3431-301)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단위수협감사지원 사업은 「수협법」에 따라 단위수협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을 수협중앙회에 위탁하면서 예산비목을 민간경상보조(320-01)로 편성·집행 하고 있어 사무의 법적 성격과 예산 과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최근 국고보조 비율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국고 지원 수준의 적정성 문제도 제기됨(보조율 : ' 24 : 13.3%, ' 25 : 11.1%, ' 26 : 9.7%).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사업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도록 예산과목을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정비하고, 조합 감사 관련 예산의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고지원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것		
19	김 건조기 교체사업 사전 준비 미흡 및 사업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수산물식품산업육성(2832-313)	주의,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김 건조기 교체 사업은 2025년 추경으로 편성(60억원)된 사업으로, 지방비 확보 지연(' 26. 1.), 사업대상자 선정 지연(' 26. 3.) 등의 사유로 2025년에 실제 집행된 금액은 8억 4,000만원(14.0%)에 불과하였고, 추경 편성의 주요 목적이었던 물김 수급 안정 및 가공능력 확충 효과 역시 상당 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향후 추경사업 편성시 지방비 확보 가능성,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장비 제작기간 등 사업 추진 여건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집행 가능성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효과가 적기에 발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주의) ○ 해양수산부는 연내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불필요한 국채발행을 야기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련자를 엄중 경고조치하고, 향후 예산·추경예산 편성시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주의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수출바우처 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한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 및 사업 정보 접근성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수산물해외시장개척(2837-30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수산식품 수출바우처사업은 서비스 수행기관에 대한 등록 시 및 선정 기준, 이행실적 점검, 장기 미공급 업체 정비 등 수행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가 미흡함. * 2025년 서비스 수행기관의 수는 636개사, 서비스 제공 건수는 2023년 248건, 2024년 457건, 2025년 846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부재 - 수출바우처 사업 관련 정보 접근성과 홍보가 미흡한 측면이 있어 신규 참여기업의 진입과 사업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음.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수출바우처 서비스 수행기관에 대한 등록·공개 및 이행실적 점검, 장기 미공급 업체 정비 등 최소한의 품질관리 장치를 마련하고, 사업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1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3040-317)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은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수산물 위생·안전체계를 구축하여 수산물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에는 예산현액 142억 4,500만원 중 21억 3,400만원을 집행(14.9%)하였고, 2025년에는 예산현액 76억 8,300만원 중 4억 200만원을 집행(5.2%)하여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함. - 사업자 공모 선정 이후 지자체 행정절차(추경예산 편성,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행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집행행이 부진한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반복되는 사업 집행 부진과 불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별 집행실적과 부진원인을 점검하고 실효성있는 집행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수산물 직매장 설치 및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의 특정 프랜차이즈 기반 직매장 지원 방식의 타당성 재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수급 위기관리체계 구축(3040-322)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수산물 직매장 설치 및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은 (주)수협유통이 운영하는 ‘어부세상’의 가맹점주 모집사업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직거래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 특정 프랜차이즈 창업지원이라는 정책수단이 부합하는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결과 2년 연속 (주)수협유통 1개 업체만 응모·선정된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 경쟁이 되도록 공모절차 개선이 필요함. - 공모 후 사업자 선정이라는 특성상 창업지원 대상자의 수요와 희망 입지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 구조로 사업 목표의 실현가능성 검토 등 사업 계획이 미흡한 상태에서 추진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음. 【수산물 직매장 설치 및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내용】 <table><tr><th>구분</th><th>사업비</th><th>지원한도</th><th>2025년 목표</th><th>2025년 성과</th></tr><tr><td>창업교육 지원</td><td>3억원</td><td>1인당 500만원</td><td>60명</td><td>25명</td></tr><tr><td>점포개설 지원</td><td>24억원</td><td>1개소당 8,000만원</td><td>30개소</td><td>1개소</td></tr></table>			구분	사업비	지원한도	2025년 목표	2025년 성과	창업교육 지원	3억원	1인당 500만원	60명	25명	점포개설 지원	24억원	1개소당 8,000만원	30개소	1개소
		구분	사업비			지원한도	2025년 목표	2025년 성과												
창업교육 지원	3억원	1인당 500만원	60명	25명																
점포개설 지원	24억원	1개소당 8,000만원	30개소	1개소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사업준비 미흡에 따른 집행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간접보조사업자 선정시 실질적인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공모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이 특정 법인의 가맹자 모집의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 설계에 관하여 재검토할 것 ○ 해양수산부는 사업 최종 선정자의 79%가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한 원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6년에 더 많은 직매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수산물이력제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수산물이력제(3041-302)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수산물이력제 사업은 제도 이행에 따른 비용에 비해 참여 유인이 부족한 점, 해양수산부의 이력추적관리 등록 품목의 의무화 대상 미고시 문제 등의 사유로 2025년 수산물 이력 관리 비중은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 대비 17.4%로 저조한 상황임. - 「수산물 유통법」 및 동 법시행령을 통해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화 및 세부 품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상황임. - 동 사업의 성과지표인 ‘수산물이력제 소비자 인지도’ 목표치를 전년 대비 매년 0.2%p 상향하는 수준으로 매우 낮게 설정하여 4년 연속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성과지표) 수산물이력제 소비자 인지도의 목표치 : (’ 23) 44.2, (’ 24) 44.4, (’ 25) 44.6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력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생산자 및 유통·판매자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와 실효성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참여 유도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할 것		
24	수산장비(임대) 활용 보조 사업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수산장비(임대)활용(지자체)(3440-311)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수산양식기자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사업 착수 후 3년 동안 예산 집행 실적이 전무하고,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사업은 3년간 실집행률이 1.9%에 그쳐 집행 실적이 극히 부진함에도 해양수산부는 집행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고보조금을 교부한 문제가 있음. * (수산양식기자재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 (’ 23) 10억원, (’ 24) 25억원, (’ 25) 17.7억원 * (실집행률) 수산양식기자재클러스터 조성사업 : (’ 23) 0%, (’ 24) 0%, (’ 25) 0% 수산기자재시험인증센터 사업 (’ 23) 0%, (’ 24) 0%, (’ 25) 4.7% (3년간 평균 1.9%)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에 부지 확보 및 사전 행정절차 완료 여부 등 지자체의 실질적인 집행 여건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여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인 이월과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정비하도록 주의할 것 ○ 해양수산부는 수산양식기자재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사업 포기 관련 매몰비용 수습에 있어 보조금법에 따라 전액 환수조치하고, 부지 매입과 지방비 조달 여부를 설계 단계의 평가 지표로 강화하며, 보조사업 실태 점검 및 관리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25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의 사업목표 재조정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어업인삶의질향상(3440-312)		주의,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은 지자체 수요조사 대비 실제 수검 인원이 당초 목표치에 미달(18.6%)하여 사업 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집행이 부진(43.9%)하고, 성과지표가 전년도 수검인원 대비 당해연도 실제 수검인원 비율로 설정되어 있어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집행률) 25년 예산액(11.7억원) 중 집행액 7.1억원(60.6%) / 실집행액 5.2억원(43.9%) * (성과지표) ' 25 검진인원 / ' 24 검진인원×100% ('25년 목표 100, 실적 113.9)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수검목표 · 수검실적(' 22~ '25) 】 <table><tr><th>구분</th><th>'22</th><th>'23</th><th>'24</th><th>'25</th></tr><tr><td>수검 목표 인원</td><td>1,500명</td><td>1,800명</td><td>11,764명</td><td>8,246명</td></tr><tr><td>수검실적(수검률)</td><td>552(36.8%)</td><td>674(37.4%)</td><td>1,350(11.5%)</td><td>1,537(18.6%)</td></tr></table>				구분	'22	'23	'24	'25	수검 목표 인원	1,500명	1,800명	11,764명	8,246명	수검실적(수검률)	552(36.8%)	674(37.4%)	1,350(11.5%)	1,537(18.6%)
		구분	'22	'23			'24	'25													
수검 목표 인원	1,500명	1,800명	11,764명	8,246명																	
수검실적(수검률)	552(36.8%)	674(37.4%)	1,350(11.5%)	1,537(18.6%)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의 실집행 및 수검 부진 원인을 분석하여 수검 편의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고 수검률을 제고할 것(주의) ○ 해양수산부는 전년도 실제 수검 실적 등을 반영하여 사업 목표를 현실성 있게 재조정함으로써 연례적인 예산 불용을 방지하고, 재조정된 목표치에 맞추어 성과지표의 측정산식과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6	해수부 소관 재해 및 안전 관련 보험 미지원액 차차년도 편성·집행 관행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양식어업재해보험(3443-30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3443-30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어업인안전보험(3443-368)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양식어업 · 어선원 · 어업인 보험 사업은 당해연도 미지원액 정산 규모가 차년도 1월에 확정되는 구조적 문제로 당해연도 국고보조 미지원액이 차차년도 예산에 편성 · 집행되고 있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2025년도 양식어업 · 어선원 · 어업인 보험 사업 집행액 중 총 272억 5,200만원은 2023회계연도 국고보조 미지원액을 충당하기 위해 집행 【2025년 양식어업 · 어선원 · 어업인 보험 사업 집행액 중 2023년도 국고보조 미지원액 집행 현황】 <table> <tr> <th>양식어업 재해보험</th> <th>어선원 · 어선 재해보상보험</th> <th>어업인 안전보험</th> </tr> <tr> <td>7억 2,900만원 (예산액 대비 2.9%),</td> <td>257억 2,200만원 (예산액 대비 13.3%)</td> <td>8억 100만원 (예산액 대비 35.7%)</td> </tr> </table>			양식어업 재해보험	어선원 · 어선 재해보상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7억 2,900만원 (예산액 대비 2.9%),	257억 2,200만원 (예산액 대비 13.3%)	8억 100만원 (예산액 대비 35.7%)
		양식어업 재해보험	어선원 · 어선 재해보상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7억 2,900만원 (예산액 대비 2.9%),	257억 2,200만원 (예산액 대비 13.3%)	8억 100만원 (예산액 대비 35.7%)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향후 정책보험의 확대 방향 등을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당해 연도 내에 미지원액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27	성과지표 개선 및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양식어업재해보험(3443-30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2025년말 기준 양식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41.5%로 당초 성과지표 목표치 보다 1.5% 상회하여 달성하였으나 제1차 양식보험 발전기본계획 상의 이행목표인 ‘ 27년까지 45%의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2026년 성과지표 목표치도 40.9%로 설정하는 등 낮게 책정하고 있으며, 양식보험 발전기본계획 목표를 달성하려는 해양수산부의 목표달성에 대한 적극성이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음.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성과지표를 개선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상품목확대, 보상금액 현실화, 이상재해 할증제외, 보험목적물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		
28	성과지표 개선 및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3443-301)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사업의 성과지표(어선원보험 가입률)은 전년대비 0.2% 상향한 11.2%로 설정하였으나 이는 2023년 실적(12.4%)과 2024년 실적(18.0%)의 수치를 하회하고 있었던 것으로, 2025년 실적(26.2%)은 목표치 2배이상 성과를 달성하여 당초 목표치가 현실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성과지표는 어선원보험에 대한 가입률만 성과지표로 삼고 있으며 어선보험에 대해서는 성과지표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함.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사업성과지표 상 목표치를 현실에 맞게 설정·개선하고 어선보험에 대한 성과지표를 마련하는 등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것		
29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3443-303)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 사업의 목적이 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지원임에도 사업의 성과지표는 국민연금에 한해서만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성과지표를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는 어업인이 아닌 국민연금 수급자수 자체로 삼는 것은 해당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성과지표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설정·개선하여 해당 사업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0	성과지표 상 목표의 현실화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어업인안전보험(3443-368)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어업인안전보험 사업의 성과지표인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현황을 보면, 22년 67.1%, 23년 78.0%, 24년 87.7%, 25년 93.8%로 증가하였으나 가입률 목표치를 2025년 60.2%로 제시하고 있어 성과지표 목표치의 현실화가 필요함. - 어업인구 감소와 어선원 보험의 당연가입 확대로 인해 안전보험 가입대상이 축소되는 상황('21년 29,218명 → '25년 27,465명)에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현실에 부합하지 않게 설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성과지표 상 목표치를 현실에 맞게 설정·개선하고, 성과관리가 수년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1	소규모어가·어선 원직불제의 실집행을 제고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수산공익직불제(3460-31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수산공익직불제 사업 중 소규모 어선원과 조건불리지역 비소규모어가에 대한 직불금이 예산 편성액 대비 각각 89억원, 16억원의 불용이 발생하여 당초 계획 대비 집행이 저조하고, 경영이양 직불금의 경우 5년간 수혜자 수가 36명으로 저조한 상황에서 사업의 실적 목표치는 수년째 16명을 유지하고 있어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2025년 예산 편성 대비 집행현황) ■ 소규모 어선원 직불제 : 예산편성 184억원 / 집행 95억원(불용액 89억원)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 예산편성 75억원 / 집행 59억원(불용액 89억원) ○ 최근 3년간 소규모어가 직불금 부정수급이 연 평균 113건이상 발생하고 있고, 전체의 64%가 행정착오 유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수 현황은 평균 25.9%로 저조하게 나타남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소규모 어선원 직불금의 지급단가 현실화,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해마다 증가하는 불용액을 줄이고, 경영이양직불사업의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 확대할 것 ○ 해양수산부는 행정착오로 인한 소규모어가직불금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 매뉴얼 배포 및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액 미환수 사유 파악과 환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32	대상 품목 선정 기준 및 지원규모 현실화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피해보전직불금(3467-30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대상 품목이 2022년 4개, 2023년 0개, 2024년 2개, 2025년 2개만 선정되는 등 대상 품목 선정 기준이 높아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FTA 피해보전 대상 품목 선정 기준과 지원규모를 현실화하고 피해 어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		
33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의 공정 관리 및 국고보조금 교부 관행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3031-31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사업 공정 및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관련 예산 교부하여 이월·재이월이 연례적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 집행 실적(실집행률 11.6%)도 저조한 실정임.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장의 실제 집행 속도와 연계하여 재원을 배분하는 등 국고보조금 교부 방식을 실효성 있게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4	해양통신망(D-MF/HF) 업데이트 사업 추진시 어획량 보고 정책과의 정합성 유지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연근해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3132-306)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연근해어업발전법」 시행에 따른 어획량 보고를 휴대폰 전용앱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면서도 어획보고 기능 개선사항을 담고 있는 D-MF/HF 업데이트 사업을 유상으로 추진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됨 * 예산현액 410백만원 중 44백만원만 집행되었는데(실집행률 10.7%), 업데이트 자부담(9만원)에 대한 불만으로 2025년 사업대상 1,950척 중 211척(10.8%)만 업데이트를 신청하여 사업 실적 저조 - 한 어선에 4~5종의 어선 무선설비 기기가 중복 설치되어 어업인의 관리 부담 및 어선위치발신장비의 관리를 위한 예산 지출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관계주체 및 근거법령도 분산되어 있어 정책·수립 집행의 비효율 발생 우려 * 근해어선에는 톤급·업종별 의무기준에 따라 V-PASS(출입항 신고), AIS(충돌예방), e-Nav(항행정보), D-MF/HF(원거리 위치·통신), VHF-DSC(근거리 통신) 등 다수의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개별적으로 설치·운영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발전법」에 따른 어획량 보고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D-MF/HF의 활용 방안을 다시 수립하고, 향후 D-MF/HF 업데이트 추진시 어획량 보고 정책과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며, 어선위치발신장비의 기능 및 중복보급 실태를 점검하여 어업인의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5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사업과 유사사업 추진시 집행여건 등 철저한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3132-304)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사업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2025.10.)에 따라 2025년 추경예산을 편성(61억 8,000만원)하였으나 국내업체의 공급능력 및 지방비 확보 가능성 등 집행여건 검토가 미흡하여 사업이 연내에 완료되지 못함. * 2025년 12월 말 구명조끼 누적 납품률은 74.5%로 전체 물량의 25.5%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공급(2026년 4월 완료)되었음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향후 대규모 물품보급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조업체의 생산능력, 핵심부품 조달 여건, 지방비 확보 가능성 등 집행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		
36	자율관리어업육 성사업의 공모 절차 및 예산 비목 편성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자율관리어업육성(3142-30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활성화지원 사업은 자율관리어업육성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연례적으로 공모절차 없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법령상 위탁사업의 성격을 가짐에도 위탁이 아닌 보조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한 문제가 있으며, 「자율관리어업 정보화시스템」은 낮은 이용실적과 정보 미갱신 상태로 운영되어 사업효과가 저조함.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활성화지원 사업의 법적 성격(위탁)에 부합하도록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지침 및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관리하며, 자율관리어업 정보화시스템 사업의 관리 부실을 시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7	감척사업 집행관리 철저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연근해어선감척(3145-30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연근해어선감척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자체에 교부금을 교부한 시점에 전액 집행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실집행액은 절반 정도만 집행되어, 결산상 집행을 (100%)과 실제 감척 진행상황이 괴리되는 측면이 있으며, 성과지표도 ‘어선 감척률’ 이 아니라 ‘적당 생산금액 증가율’ 을 사용하고 있는데, 적당 생산금액은 어획량 뿐 아니라 어종별 가격, 수산물 시세 등 외부요인의 영향도 크게 받기 때문에 감척사업만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2025년 예산액은 2,205억 6,700만원이며, 지자체 교부 등으로 결산상 집행률은 100%이나, 지자체 실집행률은 50.4%에 그침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선감척 보조금을 시도별 이월잔액과 감척 실적을 확인하여 나누어 교부하고, 성과지표를 감척 실적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할 것		
38	어선청년임대 사업의 사업 구조 개편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어선청년임대(3145-303)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어선청년임대 사업은 희망 임대료 격차, 어선 노후도 문제, 어선주 변심 등 매칭 지연 및 계약 불발 등으로 인해 정책 수혜 인원(2025년 17명)이 정체되고 있음. - 공공기관이 유희어선을 매입 형태로 청년에게 안정적으로 임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수혜 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 구조 개편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현행 지원 기간 종료 후 청년어업인이 어선을 직접 매입하거나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 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어선청년임대 사업의 대상 인원이 증가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 개편 등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 종료 후에도 어업인으로 정착·자립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9	감척어선 공공활용을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효과성 분석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감척어선 공공활용(3145-308)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따라 감척되는 어선 중 공공활용 여지가 있는 20년 이하 저선령선박(248척)의 활용률이 저조(2.8%, 7척)한 상황에서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의 목적이 ‘불법어구 수거’ 단일 용도에 한정되어 있고 공익적 활용에 대한 검토가 미흡함. * 최근 5년간 감척어선 1,454척 중 폐기 1,437척, 재활용 17척(재활용률 1.17%) 내용연수 20년 이하 감척어선 248척 중 공공활용 저선령어선 7척(활용률 2.8%) - 감척어선 1척 운영시 약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현행 성과지표(불법·폐어구 수거량(톤))는 공공성 제고라는 사업 목적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감척어선 예산 편성기준 : 총 9억 9,360만원(감척어선 수리·정비·검사 3억 4,920만원, 불법어구 수거·처리 6억 4,440만원)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감척어선의 재활용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여 청년어선임대·공공활용 사업 등과 연계한 감척어선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동 사업의 투입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 ○ 해양수산부는 감척어선공공활용 사업의 성과지표 산정 오류 여부를 점검하고, 운영선박 수·실제 운항일수·수거량·톤당 수거비용을 연계하여 사업성과를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0	바다숲조성 사업 검증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감독·검사 체계 시정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훈별회계-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3150-304)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바다숲 조성사업은 감독조서 작성 등 시공 이행 확인을 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고 감독과 검사를 발주자인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모두 수행하여 감독·검사기능의 객관성 및 신뢰도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 감독자와 검사자는 같은 본부의 직원이 감독자와 검사자를 서로 교대하여 수행하는 상호교대 감독·검사 방식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어 형식적으로 감독·검사 기능이 이루어 지고 있음. 【 2025년 바다숲조성사업 본부별 상호교대 】 <table><tr><th>본부</th><th>계약건수</th><th>감독·검사 참여 인원(명)</th><th>상호교대 감독·검사 건수</th><th>상호교대 비율(%)</th></tr><tr><td>동해본부</td><td>42</td><td>13</td><td>2</td><td>4.8</td></tr><tr><td>서해본부</td><td>28</td><td>7</td><td>3</td><td>10.7</td></tr><tr><td>남해본부</td><td>34</td><td>5</td><td>29</td><td>85.3</td></tr><tr><td>제주본부</td><td>98</td><td>11</td><td>57</td><td>58.2</td></tr><tr><td>합계</td><td>202</td><td>36</td><td>91</td><td>45.0</td></tr></table> - 일부 사업본부에서는 소수 인원에 대한 감독·검사업무의 집중이 두드러 지고 업무가 과중하여 실질적인 감독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공단 제주본부 담당자 1인이 감독 45건과 검사 29건을 합하여 총 74건을 수행, 이는 본부 계약 98건 중 감독·검사 기준 45.9%에 해당, 서해본부는 감독·검사에 참여한 인원이 3명에 불과하여 담당자 2인이 본부 감독·검사의 92.9%를 담당			본부	계약건수	감독·검사 참여 인원(명)	상호교대 감독·검사 건수	상호교대 비율(%)	동해본부	42	13	2	4.8	서해본부	28	7	3	10.7	남해본부	34	5	29	85.3	제주본부	98	11	57	58.2	합계	202	36	91	45.0
		본부	계약건수			감독·검사 참여 인원(명)	상호교대 감독·검사 건수	상호교대 비율(%)																											
동해본부	42	13	2	4.8																															
서해본부	28	7	3	10.7																															
남해본부	34	5	29	85.3																															
제주본부	98	11	57	58.2																															
합계	202	36	91	45.0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바다숲조성 사업이 시공 과정에 대한 독립적 검증의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공단 자체적으로 감독과 검사를 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고, 소수 인원의 감독·검사업무 과다 집중을 완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검증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감독·검사 체계를 시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1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사업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어업인삶의질향상(3440-312)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사업은 지역별 공급 편차가 과도하고, 지자체의 사업 계획 변경과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집행이 저조한 문제가 있음. - 2025년 기준 강원(11개소), 경북(2개소), 전남(1개소) 등 전국적으로 총 14개소가 운영 또는 건립 중으로 강원은 근로자 1,014명당 복지회관 11개소가 있으나, 전남은 근로자 수가 더 많은 12,097명임에도 복지회관은 단 1개소뿐이고, 경북 역시 2,652명 대비 2개소에 불과함.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향후 지역별 외국인 어업근로자 수 대비 복지회관 보유 비율 등 객관적 지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사업지를 선정하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가능성을 엄격히 점검하여 적정 규모로 재원을 배분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42	자부담 완화 효과의 예산 반영 필요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친환경 어구보급(3150-31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인증부표 보급 사업은 어업인 소득 감소에 따른 과중한 자부담(자부담율 50%)으로 인해 2025년 실집행은 70.1%에 그쳤으나, 2026년의 경우 자부담율을 30%로 인하하였는바, 자부담율을 낮춘 것이 실제 신청 증가와 사업포기 감소로 이어지는지 사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 어구보급 사업에는 인증부표 보급 사업 뿐 아니라 패각 친환경처리 사업도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성과지표는 ‘인증부표 보급률’ 하나만 두고 있어 실집행률이 41.4%에 그친 패각 친환경처리의 성과와 부진 원인을 별도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2026년 인증부표 자부담 완화 이후 신청률·사업포기율·실집행률 변화를 비교하여 제도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지원수준과 예산편성에 반영하며, 패각 친환경처리 사업에 대해서도 발생량 대비 처리량, 자원화율 등 별도의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내역사업별 성과를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3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조속한 정착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수산물발전기금-해양폐기물정화사업(1065-301)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어구·부표 보증금제 사업은 현장 수거 및 반납 인프라 구축 미흡으로 실집행률이 2024년 12.4%, 2025년 33.4%로 저조하며, 어구 생산업체의 판매 정보 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체 판매량 대비 정확한 회수율 집계도 어려운 실정임. * 전국에 지정된 192개 반납장소 중 실제 운영 중인 곳은 2025년 말 기준 94개소(51%) - 어구·부표 보증금제 사업의 기존 어구 수매 예산은 실제 반납 수요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되었고, 어구 반납장소가 확충되었음에도 지역별 반납 실적의 편차가 큼. * 부산(30개소), 강원(31개소), 전남(29개소)은 반납장소의 수가 비슷하나 기존 어구 반납량은 각각 11,986개, 25,598개, 118,399개로 큰 차이를 보임.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순회 수거 시스템 등 어구부표 회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를 확대하고 위탁기관을 다변화하는 등 회수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불가항력적인 어구 유실 시 어업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어구 판매 정보 등록 의무화 제도를 검토하는 등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4	성과지표를 결과 중심 지표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수산물발전기금-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3167-316)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사업지역 어장 저층부 청소 면적) 산식은 ‘당해연도 사업예산 × 최근 3년간 예산투입 대비 청소면적 평균’으로 사업 예산 규모가 커지면 성과목표도 기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이며,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폐어구 감소나 유령어업 피해 저감 여부를 직접 보여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성과지표 측정산식) - 사업지역 어장 저층부 청소면적(ha) = 당해연도 사업 예산 × 최근 3년간 예산투입 대비 청소면적 평균치(ha/백만원)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를 예산액이 산식에 포함되지 않는 결과 중심 지표(폐어구 수거량, 발생량 대비 수거율 등)로 개선하고, 2027년도 성과계획서에 반영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5	수산물 위생관리 사업의 행정입법 미비 해소 및 민간위탁사업의 지속적인 점검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수산물위생관리(3041-303)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FSIS)사업은 위탁 근거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실시(위탁기관 : (사)한국수산회)하였으나, 동 시행령의 행정입법상 흠결로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계약법령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은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산물정보에 관한 업무가 누락 -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하는 (사)한국수산회에 대한 감사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확인을 위한 감사(‘25.12, ’26.5)에 따르면 시스템 유지·관리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됨. * 2016년부터 시작된 위탁기관 동안 감사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2025년 12월에나 감사 실시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입법 상 흠결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위탁사무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동일 문제 재발시 공모 절차를 통해 수탁기관을 재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6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지원사업 면밀한 검토 및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지원(3140-30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국립양식사료연구소 건립사업과 친환경배합사료 공장건립 지원사업은 부지 사용 협의와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체, 감리비 부족분 확보 협의 지연, 사업자 공모 지연 등의 사유로 공사 일정이 순연되어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함. - 국립양식사료연구소 건립사업은 감리비 부족으로 인한 협의 지연 관련, 사업 기획 단계에서 해당사업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CM) 대상임을 사전에 점검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사업 추진 시 관령 법령 검토가 미흡하였음. - 친환경배합사료 공장건립 지원사업은 공모 당시 응모자의 자부담 미확보 등으로 인한 두 차례 유찰로 사업이 지연되어 2025년 집행 실적(실집행률 10.5%)이 저조한 실정인데, 유사한 성격인 ‘양어사료 전문 생산시설 구축 사업’ 이 경제성 부족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해 2024년 해당 사업이 최종 종료된 사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전 준비를 소홀히 하여 사업 지연을 초래함. * 2025년 예산현액 15억원 중 1억 5,800만원이 집행되고 13억 4,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집행 가능성에 기반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교부하여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8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건축 사업 정보화전략계획 (ISP) 미수립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친환경양식어업육성(3140-301)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은 ISP(정보전략계획) 용역 발주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2개월) 및 본 용역 기간(8개월) 소요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고, 지자체의 ISP 용역 등으로 사업 지연이 예상되었음에도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국고보조금 예산을 교부하여 사업집행이 저조함. 【 2023~2025년 스마트양식 빅데이터 구축 사업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 <table> <tr> <th rowspan="3">구분</th> <th colspan="3">해양수산부</th> <th colspan="7">사업수행주체</th> </tr> <tr> <th colspan="2">예산액</th> <th rowspan="2">집행액</th> <th rowspan="2">교부액</th> <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 <th rowspan="2">예산현액 (A)</th> <th rowspan="2">집행액 (B)</th> <th rowspan="2">불용액</th> <th rowspan="2">다음연도 이월액</th> <th rowspan="2">실집행률 (B/A)</th> </tr> <tr> <th>본예산</th> <th>추경</th> </tr> <tr> <td>2023</td> <td>500</td> <td>500</td> <td>500</td> <td>500</td> <td>-</td> <td>500</td> <td>-</td> <td>-</td> <td>500</td> <td>0.0</td> </tr> <tr> <td>2024</td> <td>2,000</td> <td>2,000</td> <td>2,000</td> <td>2,000</td> <td>500</td> <td>2,500</td> <td>-</td> <td>-</td> <td>2,500</td> <td>0.0</td> </tr> <tr> <td>2025</td> <td>2,200</td> <td>2,200</td> <td>2,200</td> <td>2,200</td> <td>2,500</td> <td>4,700</td> <td>2,500</td> <td>-</td> <td>2,200</td> <td>53.2</td> </tr> </table>												구분	해양수산부			사업수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불용액	다음연도 이월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23	500	500	500	500	-	500	-	-	500	0.0	2024	2,000	2,000	2,000	2,000	500	2,500	-	-	2,500	0.0	2025	2,200	2,200	2,200	2,200	2,500	4,700	2,500	-	2,200	53.2
		구분	해양수산부			사업수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불용액	다음연도 이월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23	500	500	500	500	-	500	-	-	500	0.0																																																												
2024	2,000	2,000	2,000	2,000	500	2,500	-	-	2,500	0.0																																																												
2025	2,200	2,200	2,200	2,200	2,500	4,700	2,500	-	2,200	53.2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에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보조금 교부 시에도 지자체의 실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례적인 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9	사업의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거도항복구(3345-306)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가거도항복구 사업은 특정 항만의 장기간 재해복구사업임에도 성과지표는 가거도항과 직접 관계없는 ‘국가어항 이용자 만족도’를 사용하고 있음. - 해당 만족도는 전국 110개 국가어항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가거도항 복구공사의 공정이나 사업완료 여부와 직접 연결되지 않음. 가거도항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다른 국가어항의 만족도가 높으면 동 사업의 성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임.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연차별 계획공정 대비 실제 공정률, 주요 시설 완공 여부 등 해당 사업의 진행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개선할 것		
50	사업 구조 점검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양식장임대(3347-367)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양식장임대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이 총 20개소에 불과하여 연간 투입 예산 대비 수혜 인원이 제한적인데, 양식업의 특성상 치어 입식부터 출하까지 2-3년이 소요되어 기존 선정자의 계약 연장이 필요한 점은 인정될 수 있으나, 신규 지원이 제한되고 대기자가 누적되는 구조적 병목이 발생하는 사업 구조는 개선이 필요해 보임.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양식장임대 사업이 어촌사회 신규인력 유입 촉진 효과가 있음에도 연간 수혜인원이 20명으로 적어 지원인원 확대가 필요하며, 예산 확대, 사업 구조 점검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1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의 집행 제고 방안 마련 및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어촌신활력증진(3301-303)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시범사업(어촌활력증진사업)의 집행부진에도 제도적 보완없이 본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하여 연례적인 집행부진이 발생한 문제가 있고, 사업 지연으로 ' 25년 기준 한국어촌어항공단 885억원, 농어촌공사 647억원 등 수탁기관에서 대규모 유보 자금액을 보유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였음. * (시범사업 실집행률) (' 22년) 41.9%, (' 23년) 48.1%, (' 24년) 33.8%, (' 25년) 49.4% 【 2023~2025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실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 <table><tr><th rowspan="3">연도</th><th colspan="9">최종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등)</th></tr><tr><th rowspan="2">교부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교부 현액</th><th rowspan="2">집행액 (B)</th><th colspan="2">전년도 이월액 제외</th><th rowspan="2">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h rowspan="2">실집행률 (C/A)</th></tr><tr><th>교부 현액</th><th>집행액 (C)</th></tr><tr><td>2023</td><td>40,618</td><td>-</td><td>40,618</td><td>17,864</td><td>40,618</td><td>17,864</td><td>22,754</td><td>-</td><td>42.0</td></tr><tr><td>2024</td><td>80,088</td><td>22,754</td><td>102,842</td><td>58,533</td><td>80,088</td><td>17,832</td><td>42,284</td><td>2,025</td><td>20.9</td></tr><tr><td>2025</td><td>206,812</td><td>42,284</td><td>249,096</td><td>146,461</td><td>206,812</td><td>118,831</td><td>96,632</td><td>6,003</td><td>55.4</td></tr></table>										연도	최종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등)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교부 현액	집행액 (C)	2023	40,618	-	40,618	17,864	40,618	17,864	22,754	-	42.0	2024	80,088	22,754	102,842	58,533	80,088	17,832	42,284	2,025	20.9	2025	206,812	42,284	249,096	146,461	206,812	118,831	96,632	6,003	55.4	
		연도	최종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등)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교부 현액	집행액 (C)																																																										
2023	40,618	-	40,618	17,864	40,618	17,864	22,754	-	42.0																																																							
2024	80,088	22,754	102,842	58,533	80,088	17,832	42,284	2,025	20.9																																																							
2025	206,812	42,284	249,096	146,461	206,812	118,831	96,632	6,003	55.4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한 후 사업을 착수할 필요가 있으며, 수탁기관에 과도한 유보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지별 실집행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집행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2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어촌소멸대응지원(3347-30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귀어귀촌촉진사업 중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 사업은 귀어귀촌을 위한 종합센터가 전국에 1개가 운영중으로 다양한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중이지만 성과지표는 교육수료생 숫자로만 파악하고 있고, 내내역사업인 어촌에서살아보기(귀어인의 집) 사업도 귀어인의 집을 전국 6개소 설치 지원 하고 있으나 성과지표가 존재하지 않아 각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촉진 사업의 사업성과지표를 개선하여 내역 사업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할 것		
53	청년 바다마을 조성사업 사전 준비 미흡 및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청년어촌정착지원(3347-363)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청년바다마을 조성사업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및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2025년 예산현액 20억원 중 500만원 집행에 불과하여 집행률(실집행률 0.3%)이 극히 저조한 문제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2년부터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 사업 등 유사 사업이 사업 초기부터 연례적으로 집행 지연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집행 부진이 예견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농림부 유사사업 실집행률) (' 22년) 2.7%, (' 23년) 12.3%, (' 24년) 67.6%, (' 25년) 49.0%		
		시정요구(안)	○ 해양수산부는 유사 신규 사업 추진 시 지자체 행정절차 지연 등 예상 문제점에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동일한 유형의 사업 추진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4	교통약자 승하선 편의시설 설치 사업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여객터미널 운영(5064-301)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교통약자 승하선 편의시설」은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었음. - ‘승하선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국비 100% 지원을 전제로 수요를 조사하였으나, 재정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국고 보조율이 50%로 변경된 이후 수요를 충분히 재검토하지 않아 예산 전액이 불용됨. - ‘안전보강 탑승교 제작’ 사업은 당초 설치 대상지에 대한 수요 검토와 설계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집행이 지연됨. 【 교통약자 승하선 편의시설 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table><tr><th>구 분</th><th>2025년 예산</th><th>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h>집행률</th></tr><tr><td>승하선 편의시설 설치지원</td><td>700</td><td>0</td><td>-</td><td>700</td><td>0</td></tr><tr><td>안전보강 탑승교 제작</td><td>410</td><td>0</td><td>410</td><td>-</td><td>0</td></tr><tr><td>합 계</td><td>1,110</td><td>0</td><td>410</td><td>700</td><td>0</td></tr></table>						구 분	2025년 예산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승하선 편의시설 설치지원	700	0	-	700	0	안전보강 탑승교 제작	410	0	410	-	0	합 계	1,110	0	410	700	0		
		구 분	2025년 예산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승하선 편의시설 설치지원	700	0	-	700	0																													
안전보강 탑승교 제작	410	0	410	-	0																													
합 계	1,110	0	410	700	0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승하선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율 상향 등 실효성 있는 수요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보강 탑승교 제작 사업’이 추가 지연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향후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조건 변경 시 사업수요를 재조사하여 예산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신규사업 추진 전에 현장 수요 및 기술적 여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5	내역사업별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여객터미널 운영(5064-301)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교통약자 승하선 편의시설」은 2025년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었음에도 사업의 성과지표인 ‘국가관리 여객터미널 이용자 수’는 목표 대비 116.8%*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성과지표가 실제 사업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율, 이용가능 선착장 비율 등 내역사업별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최근 4년간 성과 달성도] <table><tr><th>성과지표</th><th>구분</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th></tr><tr><td rowspan="3">국가관리 여객터미널 이용자 수(단위: 천명)</td><td>목표</td><td>2,482</td><td>1,855</td><td>1,999</td><td>2,001</td></tr><tr><td>실적</td><td>2,262</td><td>1,727</td><td>2,014</td><td>2,338</td></tr><tr><td>달성도</td><td>91.1</td><td>93.1</td><td>100.8</td><td>116.8</td></tr></table>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국가관리 여객터미널 이용자 수(단위: 천명)	목표	2,482	1,855	1,999	2,001	실적	2,262	1,727	2,014	2,338	달성도	91.1	93.1	100.8	116.8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국가관리 여객터미널 이용자 수(단위: 천명)	목표	2,482	1,855	1,999	2,001																														
	실적	2,262	1,727	2,014	2,338																														
	달성도	91.1	93.1	100.8	116.8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내역사업별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																																		
56	사전기획 및 집행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보안시설 확충(5064-303)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해양수산부는 신규 분야인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획 단계부터 사업 기간과 수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했으나,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미흡하여 계획 대비 사업이 지연됨. - 2024년도에는 3개 항만(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의 실시설계비만 집행되었고, 1년차 공사비 27억 4,100만원 전액이 이월되었으며, 2025년도에는 계속 사업지(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의 공사비 일부(16억 5,200만원)와 신규 사업지 2개소의 공사비 전액(18억 7,400만원)이 이월되었음. - 사전 연구 등을 통해 안티드론 방어체계의 글로벌 추세(소프트·하드킬 혼용)를 인지하지 못하여 초기 사업 계획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사업 착수 후 언론 지적 등에 따라 장비를 보완함.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조달절차 및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사업계획 및 집행관리를 개선하는 한편,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 착수 이전에 필수 장비 및 운영 여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보다 철저히 수행할 것																																																																																																	
57	선종별 지정목표 달성을 위한 유인책 마련 및 성과지표 목표치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6133-303)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국가필수선박 지정 척수는 총량 기준으로 목표(88척)를 달성하였으나, 유조선·가스선 등 주요 전략 선종의 실적은 연례적으로 목표에 미달하고 있으며, 실적 대비 과도하게 낮은 목표치를 관행적으로 설정*하여 성과계획서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음. * 2021~2025년 성과 목표를 국가필수선박 지정 83척으로 설정하여 연속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88척)함 [최근 5년간 국가필수선박 선종별 지정 현황] (단위: 척)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2021</th><th colspan="2">2022</th><th colspan="2">2023</th><th colspan="2">2024</th><th colspan="2">2025</th></tr><tr><th>목표</th><th>지정</th><th>목표</th><th>지정</th><th>목표</th><th>지정</th><th>목표</th><th>지정</th><th>목표</th><th>지정</th></tr><tr><td>벌크선</td><td>24</td><td>30</td><td>24</td><td>30</td><td>24</td><td>29</td><td>24</td><td>29</td><td>24</td><td>29</td></tr><tr><td>유조선</td><td>12</td><td>6</td><td>12</td><td>6</td><td>12</td><td>8</td><td>12</td><td>9</td><td>12</td><td>9</td></tr><tr><td>가스선</td><td>21</td><td>19</td><td>21</td><td>19</td><td>21</td><td>20</td><td>21</td><td>20</td><td>21</td><td>18</td></tr><tr><td>컨테이너선</td><td>20</td><td>21</td><td>20</td><td>21</td><td>20</td><td>19</td><td>20</td><td>18</td><td>20</td><td>19</td></tr><tr><td>자동차선</td><td>11</td><td>12</td><td>11</td><td>12</td><td>11</td><td>12</td><td>11</td><td>12</td><td>11</td><td>13</td></tr><tr><td>합 계</td><td>88</td><td>88</td><td>88</td><td>88</td><td>88</td><td>88</td><td>88</td><td>88</td><td>88</td><td>88</td></tr></table>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목표	지정	목표	지정	목표	지정	목표	지정	목표	지정	벌크선	24	30	24	30	24	29	24	29	24	29	유조선	12	6	12	6	12	8	12	9	12	9	가스선	21	19	21	19	21	20	21	20	21	18	컨테이너선	20	21	20	21	20	19	20	18	20	19	자동차선	11	12	11	12	11	12	11	12	11	13	합 계	88	88	88	88	88	88	88	88	88	88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목표	지정		목표	지정	목표	지정	목표	지정	목표	지정																																																																																										
벌크선	24	30	24	30	24	29	24	29	24	29																																																																																										
유조선	12	6	12	6	12	8	12	9	12	9																																																																																										
가스선	21	19	21	19	21	20	21	20	21	18																																																																																										
컨테이너선	20	21	20	21	20	19	20	18	20	19																																																																																										
자동차선	11	12	11	12	11	12	11	12	11	13																																																																																										
합 계	88	88	88	88	88	88	88	88	88	88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국가필수선박의 선종별 지정 목표를 실효성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유인책을 마련하고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목표치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8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관공선건조 및 운영(6133-30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2년 사업 착수 이후 매년 6~11개월의 사업기간 연장이 반복되고 있으며, 「제1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21~’30)」은 2025년까지 공공선박 90척을 친환경선박으로 개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해양수산부 소관 65척에 그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사업이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기본계획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9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점검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6133-328)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선수금 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 발급 지연으로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의 실행행률이 53%로 저조하였는바, 지원 대상 선정 및 사업관리 과정에서 RG 발급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발급 지연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 실행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table><tr><th>부처 예산액</th><th>해양진흥공사 교부액</th><th>실행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실행행률</th></tr><tr><td>23,050</td><td>23,050</td><td>12,222</td><td>10,828</td><td>53.0</td></tr></table>			부처 예산액	해양진흥공사 교부액	실행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실행행률	23,050	23,050	12,222	10,828	53.0
		부처 예산액	해양진흥공사 교부액			실행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실행행률							
23,050	23,050	12,222	10,828	53.0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향후 지원 신청 시 RG 발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선하는 한편, 2025년도에 이월된 지원금이 2026년 중 집행될 수 있도록 RG를 발급받지 못한 선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0	성과관리체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6133-328)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동 사업 성과지표는 ‘민간 외항선사 신조지원 척수’ 로, 2025년도에는 12척 지원을 목 표로 설정했으나 달성도는 75%에 그쳤으며, 지원 대상 선박의 인증등급과 추진연료가 서로 다른데 이를 모두 동일하게 ‘1척’ 으로 계산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탈탄소 성 과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 성과 달성도 】 <table><tr><th>성과지표</th><th>구분</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th></tr><tr><td rowspan="3">민간 외항선사 신조지원 척 수</td><td>목표(척)</td><td>신규</td><td>7</td><td>10</td><td>12</td></tr><tr><td>실적(척)</td><td>신규</td><td>12</td><td>15</td><td>9</td></tr><tr><td>달성도(%)</td><td>신규</td><td>171.4</td><td>150</td><td>75</td></tr></table>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민간 외항선사 신조지원 척 수	목표(척)	신규	7	10	12	실적(척)	신규	12	15	9	달성도(%)	신규	171.4	150	75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민간 외항선사 신조지원 척 수	목표(척)	신규	7	10	12																											
	실적(척)	신규	12	15	9																											
	달성도(%)	신규	171.4	150	75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사업수요 부진의 원인을 분석하고 ‘CO2 감축 예상량’ 등 질적 성과지 표를 마련하는 등 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할 것																															
61	법적 근거 마련 후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항만서비스 산업 선진화 지원(6133-355)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에 질량유량계 설치의무, 정량공급 표본조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에의 업무위탁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을 전제로 민간위탁사업비 1억원을 편성한 후 업무위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간경상보조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한 것은 사업의 실질과 예산 과목이 일치하지 않는 집행임.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농해수위) 계류 중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 2026년에는 법률상 설치의무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물량을 6배로 확대하면서 선사에게 비용의 50%(적당 1억 7,500만원)를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의 집행 부진이 우려됨. 【 2025 · 2026년 질량유량계 설치지원 사업 비교 】 <table><tr><th>구 분</th><th>2025년</th><th>2026년</th></tr><tr><td>지원목표(척)</td><td>4</td><td>24</td></tr><tr><td>적당 설치비(억원)</td><td>2.5</td><td>3.5</td></tr><tr><td>국고보조율(%)</td><td>100</td><td>50</td></tr><tr><td>지원 · 신청 실적(척)</td><td>4</td><td>7*</td></tr></table> *2026년 상반기 공고 신청 기준			구 분	2025년	2026년	지원목표(척)	4	24	적당 설치비(억원)	2.5	3.5	국고보조율(%)	100	50	지원 · 신청 실적(척)	4	7*														
		구 분	2025년	2026년																														
지원목표(척)	4	24																																
적당 설치비(억원)	2.5	3.5																																
국고보조율(%)	100	50																																
지원 · 신청 실적(척)	4	7*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법률 제 · 개정을 전제로 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업무수행 체계가 확정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법률안 심사와 예산안 편성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법률안 처리 여부에 따라 집행을 유보하거나 사업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할 것																																	
62	연도별 보조율의 급격한 변동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친환경선박 보급 촉진(6332-315)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최대 보조율이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낮아져(30%→11%) 선사의 사업 참여 유인이 약화됨에 따라 2025년 ‘지원 척수’가 단 2척에 불과하였으며 ‘CO2 감축 예상량’ 역시 2,195톤으로 목표(5,173톤) 대비 달성도가 42.4%에 불과하였음. 【 친환경선박 건조지원 및 성과 현황 】 <table><tr><th>구 분</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th></tr><tr><td>최대 보조율(%)</td><td>30</td><td>30</td><td>30</td><td>11</td></tr><tr><td>지원척수(척)</td><td>5</td><td>6</td><td>6</td><td>2</td></tr><tr><td>CO2 감축 목표(톤)</td><td>3066</td><td>4973</td><td>5072</td><td>5173</td></tr><tr><td>CO2 감축 실적(톤)</td><td>4737</td><td>1632</td><td>6105</td><td>2195</td></tr><tr><td>달성도(%)</td><td>154.5</td><td>32.8</td><td>120.4</td><td>42.4</td></tr></table>						구 분	2022	2023	2024	2025	최대 보조율(%)	30	30	30	11	지원척수(척)	5	6	6	2	CO2 감축 목표(톤)	3066	4973	5072	5173	CO2 감축 실적(톤)	4737	1632	6105	2195	달성도(%)
구 분	2022	2023	2024	2025																														
최대 보조율(%)	30	30	30	11																														
지원척수(척)	5	6	6	2																														
CO2 감축 목표(톤)	3066	4973	5072	5173																														
CO2 감축 실적(톤)	4737	1632	6105	2195																														
달성도(%)	154.5	32.8	120.4	42.4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보조율과 지원한도 기준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예산 제약 시에는 보조율을 급격히 삭감하기보다 연도별 지원물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63	국내여비의 국외업무여비로 의 세목조정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표지시설(6350-300)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항로표지 개량(유지보수)」은 국내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외업무여비로 세목 조정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2023년 이후 연례적으로 발생하였음. 【 연도별 국외업무여비 세목조정 현황 】 (단위: 백만원) <table><tr><th>연도</th><th>감액 세목</th><th>중액 세목</th><th>조정액</th></tr><tr><td>2023</td><td>국내여비(220-01)</td><td>국외업무여비(220-02)</td><td>35</td></tr><tr><td>2023</td><td>일반수용비(210-01)</td><td>국외업무여비(220-02)</td><td>12</td></tr><tr><td>2023</td><td>국내여비(220-01)</td><td>국외업무여비(220-02)</td><td>10</td></tr><tr><td>2024</td><td>국내여비(220-01)</td><td>국외업무여비(220-02)</td><td>34</td></tr><tr><td>2025</td><td>국내여비(220-01)</td><td>국외업무여비(220-02)</td><td>55</td></tr></table>			연도	감액 세목	중액 세목	조정액	2023	국내여비(220-01)	국외업무여비(220-02)	35	2023	일반수용비(210-01)	국외업무여비(220-02)	12	2023	국내여비(220-01)	국외업무여비(220-02)	10	2024	국내여비(220-01)	국외업무여비(220-02)	34	2025	국내여비(220-01)	국외업무여비(220-02)	55
		연도	감액 세목			중액 세목	조정액																						
2023	국내여비(220-01)	국외업무여비(220-02)	35																										
2023	일반수용비(210-01)	국외업무여비(220-02)	12																										
2023	국내여비(220-01)	국외업무여비(220-02)	10																										
2024	국내여비(220-01)	국외업무여비(220-02)	34																										
2025	국내여비(220-01)	국외업무여비(220-02)	55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예측 가능한 국외출장 경비는 국외업무여비에 직접 반영하는 한편, 국내출장 수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위에서만 국내여비를 요구·편성하여 국내여비의 국외업무여비로의 세목조정을 최소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4	실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해양 및 수자원 관리(1062-301)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연안정비」의 전체 실집행률은 25.9%에 불과하고, 강원도 8.2%, 경상남도 15.1%, 전라북도 18.5%, 전라남도 35.8% 등 일부 지자체의 집행 부진이 특히 심각한바, 해양수산부는 지자체별 집행 부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자체 담당자의 발주·공정 관리 역량 강화,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집행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중앙부처 차원의 실효성 있는 공정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연안정비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65	해양생태계 보전부담금 적정 소요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부산항 진해신항(5050-305)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를 위한 건설보상비는 실제 훼손 예정 면적과 지역계수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과다 편성되었고, 실시계획 확정 및 부담금 일부 납부 이후에도 잔여 소요액을 재산정하지 않아 2025년 이월액 12억 3,000만원 중 약 91%가 불용됨. 【 2025년 내역사업별 건설보상비 집행률 】 (단위: 백만원, %) <table><tr><th>내역 사업명</th><th>예산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예산 현액(A)</th><th>집행액 (B)</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h>집행률 (B/A)</th></tr><tr><td>남방과제</td><td>-</td><td>48</td><td>48</td><td>9</td><td>-</td><td>39</td><td>18.8</td></tr><tr><td>준설토투기장 (3구역)</td><td>-</td><td>1,140</td><td>1,140</td><td>98</td><td>-</td><td>1,042</td><td>8.6</td></tr><tr><td>남측 방파호안</td><td>-</td><td>42</td><td>42</td><td>-</td><td>-</td><td>42</td><td>0</td></tr></table>			내역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남방과제	-	48	48	9	-	39	18.8	준설토투기장 (3구역)	-	1,140	1,140	98	-	1,042	8.6	남측 방파호안	-	42	42
내역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남방과제	-	48	48	9	-	39	18.8																										
준설토투기장 (3구역)	-	1,140	1,140	98	-	1,042	8.6																										
남측 방파호안	-	42	42	-	-	42	0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법정부담금 예산 요구 시 관계 법령과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소요를 정밀히 추계하고, 실시계획 확정 후 잔여 소요를 재산정하여 과다 이월 및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66	민자사업 추진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5050-315)	주의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 사업은 민간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었으며, 2025년에는 기본설계 검토용역비로 기본조사설계비 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민간투자사업자 제3자 제안공고 최종 유찰*에 따른 사업방식 전환(BTO→비관리청 항만개발)으로 정부지원시설 추진계획도 함께 순연되어 예산 전액을 이월 및 불용함. * 최초 제안자는 BTO-a 방식으로 사업을 제안하였으나 BTO 방식으로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함에 따라 두 차례의 공고 모두 유찰 【 최근 3년간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table><tr><th>연도</th><th>예산액</th><th>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h>집행률</th></tr><tr><td>2023</td><td>2,520</td><td>0</td><td>-</td><td>2,520</td><td>0</td></tr><tr><td>2024</td><td>800</td><td>0</td><td>-</td><td>800</td><td>0</td></tr><tr><td>2025</td><td>100</td><td>0</td><td>99</td><td>1</td><td>0</td></tr></table>			연도	예산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2023	2,520	0	-	2,520	0	2024	800	0	-	800	0	2025	100	0	99	1	0
		연도	예산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2023	2,520	0	-	2,520	0																								
2024	800	0	-	800	0																								
2025	100	0	99	1	0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세부 추진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유사 사업에서 민자사업의 추진 방식을 변경할 경우 민간의 참여 가능성 및 사업여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8	실집행 부진 내역사업에 대한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6332-314)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안산 추모시설 건립」과 「안산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은 연약지반 및 범정보호종 발견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실집행률이 저조함. - 「안산 추모시설 건립」은 착공 후 연약지반이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25년 10월 재착공하여 2025년 실집행률이 19.1%임. - 「안산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은 범정보호종 발견에 따라 조치 기간동안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 올해 착공이 예정되어있으며 2025년 실집행률은 15.4%임.		
		시정요구사항	○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후속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 공사비 발생 및 준공 지연을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유사 사업은 사전 조사를 강화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다. 농촌진흥청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발농업기계 기술이전 촉진 및 기계화율 제고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현장맞춤형발농업기계고도화(R&D)(1136-344)	제도개선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논농업 기계화율은 ' 24년 기준 99.7%인 반면, 밭농업 기계화율은 67.0%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파종·정식 18.2%, 수확 42.9%로 핵심 작업공정의 기계화율이 낮음. - 「제9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22~' 26)」상 ' 26년 목표는 77.5%이나 최근 8년간 연평균 증가폭은 1.09%p에 불과함. ○ 밭농업기계 개발·보급 관련 R&D 예산은 ' 21년 33억 9,700만원에서 ' 25년 71억 2,400만원으로 약 109.7% 증가한 반면, 당해연도 기술이전 대수는 ' 21년 745대에서 ' 25년 141대로 급감함. - ' 25년 개발 완료된 7개 기종 중 보행형 자동 배추 정식기, 반자동 양파 정식기, 2조식 반자동 엽채류 정식기는 당해연도 기술이전 실적이 전무함.		
		시정요구(안)	○ 농촌진흥청은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개발이 완료된 밭농업기계에 대한 기술이전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신속한 기술이전 및 밭농업 기계화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농촌진흥청 연구개발(R&D) 신규과제의 경쟁성 확보 필요	관련사업명	연구개발(R&D) 사업 공통	제도개선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농촌진흥청 소관 신규 공모 연구과제의 단독응모율은 IRIS가 도입된 2023년 22.7%까 지 낮아졌으나, 2024년 57.1%, 2025년 54.9%로 다시 상승하여 참여제한 요인 점검과 공고방식·자격요건 등의 개선이 필요함. - 2025년 단독응모율이 50% 이상인 세부사업은 신품종지역적응연구(91.9%), 농자재관리 및평가(83.3%) 등 4개로 모두 지정공모 방식이며, 이들 단독응모 과제에 배분된 정부 지원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기간 기준 1,782억 7,500만원에 이름. ○ 농촌진흥청은 법정임무·전문성·시설 등으로 수행기관이 제한된다고 설명하나, 2025년 재공모를 실시한 10개 과제 중 5개에서 응모기관 수가 증가하여 공고조건 과 기획방식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안)	○ 농촌진흥청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경쟁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신규 공모 연구과제의 기획·공고 방식을 개선하고, 단독응모가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는 그 원인을 점검하여 경쟁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출연금의 성과지표 적정성 재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1136-300)	제도개선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동 출연금은 9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25년 정부 성과계획의 대표 지표가 '신품종 종자 보급량'인 결과, 예산의 45.1%를 차지하는 종자·종묘 생산·보급 사업의 성과만 직접 측정할 수 있고, '27년부터 기술사업화 제품매출액 지표를 추가하더라도 포괄 범위는 전체 예산의 54.8%에 그쳐 나머지 사업의 성과는 확인하기 어려움. ○ 내부 성과지표도 다수가 보급량·처리건수·합격자 수 등 산출 또는 과정 단계에 머물러 있고, 최근 3년간 목표 미달 사례가 없어 목표치가 과거 실적을 기계적으로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설정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안)	○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9개 내역사업의 성과가 모두 측정될 수 있도록 사업 전체를 대표하는 핵심지표와 내역사업별 보조지표를 함께 마련하고, 성과 목표도 최근 실적 추세와 정책목표를 반영하여 도전적으로 설정하며, 그 결과를 출연금 규모 조정 및 사업구조 개편에 반영하는 등 출연금 성과관리를 내실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농업용 로봇 실증사업의 사후관리 및 상용화 체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보조)(2131-306)	제도개선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농촌진흥청은 2023~2027년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3~2025년 실증 과정에서 GPS 수신 불량과 통신 불안정이 반복되는 등 산간·간척지·경사지와 과수원 등 다양한 농촌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2025년 이천지역 실증농가 조사에서 자율주행 트랙터의 유지보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2.8점에 그치는 등 농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A/S 체계도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방제·제초·예찰로봇은 전년도에 지적된 성능결함이 다음 연도에도 반복되는 등 현장 의견을 제품 개선에 반영하는 환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안)	○ 농촌진흥청은 농업용 로봇 실증지역 선정 전 통신·GPS 등 기반환경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농번기 신속 A/S 체계 및 현장 결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개선이 확인되지 않는 기종의 재실증을 제한하는 한편, 2027년 사업 종료 전 상용화·구매지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현장보급 로드맵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치유농업 전문인력의 활용 연계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농촌자원소득화지원(보조)(2234-305)	제도개선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농촌진흥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고 있으나, 치유농업센터 및 치유농장 등에서 이들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자격 취득이 실제 현장 배치 및 취업·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취약함. ○ 사업 성과지표도 프로그램 참여자 수 등 단순 이용자 실적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평가할 지표가 결여되어 있음.		
		시정요구(안)	○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사 양성에 그치지 않고 치유농업센터 및 농촌 현장과의 실질적인 일자리·사업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문인력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품질 중심의 성과지표 개선을 통해 치유농업 육성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6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성과지표 재설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농업전문인력양성(보조)(2431-300)	제도개선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신규농업인에게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단계별 현장실습 교육을 제공하여 영농정착을 유도하고 현장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농업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임에도, 성과지표가 ‘자격증 취득비율’로 설정되어 있어 농업인의 실질적인 역량 향상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업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안)	○ 농촌진흥청은 사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과지표를 새롭게 재설계하고, 실적산정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부지취득 선행절차의 진척을 반영한 건설보상비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기반구축(1131-307)	제도개선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5년 예산현액 6억 3,000만원 중 2,100만원만 집행(3.3%)하고 6억 900만원을 불용하였는데, 불용액의 98.5%인 6억원이 건설보상비이므로, 주요 불용사유는 부지취득이라는 핵심 선행조건의 미충족에 있음. ○ 건설보상비는 ’ 24년 3억원, ’ 25년 6억원, ’ 26년 3억원 등 3개 연도에 걸쳐 12억원이 편성되었음에도 ’ 26년 6월말 기준 실제 집행된 금액이 전무하며, 동 사업은 ’ 24년에도 계획변경·취소로 14억 7,100만원을 불용하는 등 낮은 집행실적이 반복되고 있음.		
		시정요구(안)	○ 농촌진흥청은 타당성재조사 결과와 부지취득 조건을 반영하여 총사업비·사업기간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재정비하고, 사업지연 및 계획변경·취소로 인한 예산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과 추진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파속채소연구소 건축사업의 사업지연에 따른 대규모 불용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파속채소연구소 구축(R&D)(1231-306)	제도개선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예산현액 132억 1,600만원 중 71억 3,200만원만 집행하여 집행률이 54%에 그쳤고, 불용액 60억 8,400만원의 99.9%가 착공을 전제로 편성된 공사비와 감리비에서 발생하였는데, 공사비 52억 5,200만원은 전액 미집행됨. - 농촌진흥청은 2025년 5월 착공을 계획하였으나, 예산 편성 당시 선행 절차인 기본조사 설계 용역이 지연되고 있어 연내 착공과 공사비 집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 - 부지 적정성·지장물·인허가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도 충분하지 않아 농수관로 이설 협의(한국농어촌공사)에 약 7개월,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농식품부)에 약 4개월이 소요되었고, 집행률도 '23년 80.7% → '24년 73.2% → '25년 54.0%로 계속 하락하고 있음.		
		시정요구(안)	○ 농촌진흥청은 토지보상·수용재결 및 관계기관 협의 일정을 구체화하고 비용변동요인을 함께 관리하는 사업관리계획을 마련하며, 향후 대규모 시설사업 추진 시 부지 적정성·지장물·인허가 가능성 등을 예산 편성 전에 면밀히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연례적 집행 부진 및 회계연도 말 대규모 전용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R&D)(1232-305)	주 의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예산현액 432억 5,400만원 중 302억 700만원만 집행하여 집행률이 69.8%에 그쳤고, '23년 20억 9,200만원, '24년 134억 1,100만원에 이어 '25년에도 112억 1,600만원이 같은 사업지연 사유로 불용되고 있음. ○ 실시설계 적격자가 '25년 9월에야 선정되어 연내 본공사 착수가 곤란하였음에도 건설보상비 없이 공사비만 341억 8,800만원을 편성한 결과, 그 80.9%가 타 비목으로 전용·조정되고 남은 공사비도 61억 4,900만원이 불용되어 연구동·축사 등 본공사는 착수하지 못함. - 특히 회계연도 종료 이틀 전(12. 29.) 공사비 175억 3,000만원을 건설보상비로 전용·이체하였으나 실제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음.		
		시정요구(안)	○ 농촌진흥청은 설계 진행상황, 보상절차 및 착공 가능 시기 등 사업 추진여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이 어려운 공사비를 과다 편성하거나 편성 목적과 다른 비목으로 대규모 전용·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회계연도 종료 직전 전용된 175억 3,000만원을 위탁기관 계좌로 대규모 이체하는 등 집행실적을 왜곡하는 방식의 예산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라. 산림청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정보시스템 감리계획 수립 및 감리용역 추진 체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산림공간정보기반조성(7036-301)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축’은 정보시스템 감리의무 대상임에도,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등의 감리기준에 반하여 예산안 편성단계부터 감리비 예산요구 없이 불확실한 낙찰차액을 재원으로 감리용역 추진을 계획함. - 또한 실제 기술력 중심의 평가방식 적용으로 낙찰차액이 300만원에 불과하자 당초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을 감리비로 배정하여 감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감리계약은 사업 계약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체결되는 등 부실한 감리계획 수립 및 감리용역이 추진됨.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감리의무 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감리비를 본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감리용역을 사업 초기부터 계획·발주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산림과학연구의 현장 확산 및 효과 측정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산림과학연구(R&D)(1251-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산림생명자원 이용 임업소득 증대 연구’에 연간 95억원 이상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성과지표가 논문 영향력 지수뿐이어서, 해당 연구가 현장에 얼마나 기술이전 및 보급되었고 이를 활용한 임가의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음. - ‘산림과학연구(R&D)’ 사업의 성과지표는 학술지 등급별 논문 실적을 가중 합산한 ‘산림과학논문 영향력 지수’ 하나로, 2025년 목표(525.6점) 대비 초과 실적(656점)을 달성함. ○ 연구가 논문이나 특허로 이어졌더라도 임업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는다면 ‘임업소득 증대’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학술성과와 함께 연구결과의 현장 확산 및 경제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산림생명자원 이용 임업소득 증대 연구’ 등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과학연구에 대하여 논문·특허 등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기술의 현장 보급·활용 정도와 임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 매출 증가 효과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산림과학연구의 연구개발 성과가 임업인 소득 증대로 환류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농림위성 발사일정과 연구개발 일정 간 연계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농림위성 융합 지능형 산림특화 정보기반 연구(R&D)(1251-402)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사업 추진의 핵심 전제인 농림위성 발사 일정이 2026년 하반기로 연기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사업 일정과 추진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25년 말 종료되어 연구개발성과의 검증에 한계가 있었음. - 농림위성 영상정보를 활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실제 위성 운용환경에서의 데이터 연계와 성능 검증이 중요하나 위성 발사 이전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제 농림위성 데이터와 연계하여 검증할 기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였음. - 사업 종료 이후 실제 위성 데이터 적용 과정에서 알고리즘 개선이나 추가 개발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행할 주체와 재원도 불분명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향후 국가위성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연계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프라 구축 일정과 연구개발 일정을 상호 연계하여 관리하고, 실제 운용환경에서 연구성과를 검증·보완할 수 있는 사업기간 확보 및 후속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종료 시점에 임박한 연구장비 구입 지양	관련사업명	일반회계-농림위성융합 지능형 산림특화정보기반연구(R&D)(1251-402)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국립산림과학원은 내역사업인 ‘농림위성 지능형 산림정보 활용기반 구축 연구’의 2025년도 연구장비 구입비 48억 2,100만원 중 집행잔액 11억 8,653만원을 자체 재배정하여 집행하면서 8억 8,150만원(20건)은 연말인 11월 및 12월에 집행함. - 동 사업의 집행 절차를 보면 과제 종료 시점인 11~12월에는 과제평가와 평가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고, 동 사업으로 진행된 2025년 연구과제(일반연구비) 13건의 계약도 모두 10월 또는 11월에 연구 종료 및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어, 연말 구입 장비들이 당해연도 연구수행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시 연간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과제종료 시점에 임박하여 연구장비 구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소속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친환경 목재생산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적절한 예산규모를 재산정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목재생산관리(1540-300)	주의	산림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친환경 목재생산’은 11억 2,500만원 전액을 8개 시·도에 교부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2억 2,500만원(20%)에 그치고 8억 9,4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인식 부족과 신청서류 작성 등의 절차적 어려움으로 인한 지원금 미신청 및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 등이 문제로 지적됨. - 8개 시·도 중 7개가 실집행률 40% 미만이고, 전라북도는 실집행액이 없으며 경기도는 1.6%만 집행하였음에도, 시·도별 편차의 원인분석이나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한 점검 실적이 제시되지 않음. ○ 집행부진 사유인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목재생산량 및 대면적 목재수확지 감소’는 편성 단계에서 예측 가능하였던 시장 여건임에도, 편성근거가 ‘5,624ha× 2백만원×20%×50%’로 산정되어 실제 집행 규모의 5배 수준으로 계상됨. - 2026년 예산은 7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 감액되었으나, 2025년 실집행액의 3.5배 수준임.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친환경 목재생산 사업의 예산 편성 시 최근 실집행 실적과 목재수확지 발생 전망을 반영하여 편성하고, 사업 인지도 및 미신청 사유를 조사하여 별채 허가 단계에서의 사업 안내 등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인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지자체별 실집행률 편차의 원인을 분석하여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한국임업진흥원 신청사 설립 관련 보조금 집행대책 마련 및 향후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한국임업진흥원 지원(1542-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한국임업진흥원은 신청사 설계 공모 소송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2024년도 및 2025년도 보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임. - 2026년으로 이월된 공사·감리비(94억 2,751만원)의 경우에도 착공 시기는 12월로 예상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중 대부분(예산액 82억 2,000만원, 약 87%)은 재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집행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신청사 입주 시점이 당초 계획(' 26.12.) 보다 2년 뒤(' 28.12.)로 늦춰지게 되면서 대전 임시청사 임차료 등 당초 계획 대비 약 21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파악됨.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 신청사 설립 사업 지연에 따라 보조금의 집행부진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예산 집행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신청사 설립 사업추진 일정이 연장될수록 임시청사 임차료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설계 공모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사업준비로 인한 설계 공모 소송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한국임업진흥원의 R&D 외부용역 수행기관 선정의 공정성 및 다양한 기관의 참여기회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한국임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R&D)(1544-309)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한국임업진흥원의 R&D 기획평가관리비 집행내역을 보면, 최근 3년간 외부용역의 대부분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되었고, 일부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확인되어 용역 수행기관 선정 과정의 경쟁과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2025년 외부용역 34건 중 33건이 수의계약으로 추진되었고,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31건 중 26건, 35건 중 32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 ○ 또한 한국임업진흥원의 핵심적인 R&D 기획·평가 역량과 전문성이 기관 내부에 충분히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 한국임업진흥원이 관리하는 R&D 사업 규모는 2021년 471억 2,900만원에서 2025년 614억 2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연구관리 전담인력은 14명 수준에 불과하고 기획·평가 업무를 외부용역에 상당 부분 의존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외부용역의 경쟁입찰을 확대하고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용역 수행기관 선정의 공정성 및 다양한 기관의 참여기회를 제고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의 연구관리 인력 재배치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R&D 기획·평가 역량을 강화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산사태 현장대응 기술개발사업의 통합검증 및 추진체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산사태 현장대응 기술개발(R&D)(1544-316)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산사태 현장대응 기술개발사업은 감지·전달·대피 기술을 개별 과제로 분리하여 개발한 후 2029년 사업 종료 시점에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개발 과정에서 충분한 연계·통합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스템 연계 오류와 사업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산사태 예방·대응 및 주민 대피 등 실제 정책 집행은 산림보호국의 업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나 산림산업정책국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어, 연구개발 과정에 재난 대응 현장의 정책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산사태 현장대응 기술개발사업을 개발 단계부터 단계별 통합 검증 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하고, 사업의 성격상 산림보호국의 핵심업무와 직접 연계되는 만큼 사업 추진체계를 재검토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산림재난 대응에 소요되는 인건비 예산 반영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지방산림청 인건비(총액인건비)(7007-1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대형산불이나 산사태 발생 규모를 사전에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난 발생을 전제로 과도한 인건비를 상시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산림청 결산자료의 ‘연도별 주요 이·전용 내역 및 사유’를 보면 최근 4년 중 3년에 걸쳐 재난 대응에 따른 인건비 부족이 반복되고 있음. - 산림재난의 발생 빈도와 대응 소요는 과거 실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에도 재난 대응 인력의 인건비는 별도로 추계되지 않아, 국회 심의를 거쳐 편성된 다른 사업의 예산을 이·전용하여 사후 충당하는 방식 반복 - 2022년 23억원 이용(태풍 힌남노 피해 대응), 2023년 1억원 전용(산불재난 초과수당 부족), 2025년 16억 9,500만원 이·전용(산림재난 대응 초과수당 부족)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과거 대형산불, 산사태 발생 실적과 그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지급 실적을 분석하여 재난 대응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를 지방산림청 인건비 편성 시 반영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연례적 전액 불용 및 제도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1538-306)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이행점검 및 사업관리’의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는 「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포상금 집행사례가 없는 실정임(2022년부터 매년 1,000만원 편성 및 불용 반복). - 이는 농업분야 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2025년 기준 361건 접수) 및 부정수급 의심자를 대상으로 한 산림청의 2025년 합동 실태조사 점검[선정대상 400건 중 116건 (30.2%)이 등록 및 의무사항 등에서 미흡] 결과와는 대조적임.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임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 등 예방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신고의 접근성과 인지도를 제고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매실, 단감 생산자에 대한 경영체 등록 방안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1538-306)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임야에서 매실, 단감을 생산하는 농업인은 2018년 이전까지는 농지·임야 구분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2020년 산림청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업무 처리요령」을 마련하면서 농업경영체는 농지, 임업경영체는 임야를 기준으로 각각 등록하도록 구분됨. - 이에 따라 임야에서 매실, 단감을 재배하는 생산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워졌으며, 매실, 단감이 임산물에도 포함되지 않아 임업경영체 등록 역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 차(茶) 역시 유사한 문제가 있었으나, 2025년 10월 「임산물생산업의 “그 밖의 임산물” 품목」(산림청 고시) 개정을 통해 임산물에 포함되면서 경영체 등록이 가능함.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매실, 단감 생산자에 대한 경영체 등록 방안을 마련하고, 「임산물생산업의 “그 밖의 임산물” 품목」에 포함하는 방안 및 산지를 농지로 전환하는 특례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임도시설 사업의 수의계약 개선과 계약관리 및 현장점검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임도시설(1537-301, 1536-302)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2025년도 임도시설 사업계약 총 2,745건 중 84.6%에 해당하는 2,323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됨. 특히, 산림청 발주분의 경우 수의계약 비중이 건수 기준 83.9%로 대부분의 사업이 경쟁입찰 없이 진행되었음. ○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산림조합은 공사관리 인력이 부족한데도 현장대리인 중복 배치 또는 자격 미달 인력 배치 등의 문제가 있었고, 부실시공으로 벌점을 받은 사업자도 이후 계약·입찰에서 충분한 제재 없이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지적됨.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임도시설 사업의 경쟁입찰 비중을 확대하고, 수의계약 시 법적 근거와 불가피성 등을 명확히 검토·기록하며, 사업의 기술력·시공실적·안전관리 역량 등을 반영한 계약관리와 부실시공·벌점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임도시설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성 재검토와 관리체계 정비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임도시설(1537-301, 1536-302)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간선임도 활용도는 2023년 94.2%에서 2025년 90.8%로 하락하고 있고, 강원·경상권을 중심으로 조림·숲가꾸기·목재수확 등 산림경영 활동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신규 임도 개설에 매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감사원 감사에서 다수의 부설시공 사례가 확인되는 등 타당성 평가와 품질관리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임도가 산사태 발생이나 산불 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립공원공단과 국립산림과학원 등 관계기관 간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독립적인 평가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신규 간선임도 설치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부설시공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타당성 평가·품질관리 체계를 정비하며, 임도가 산사태 발생 및 산불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보완책을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사업의 지방비 미확보에 따른 예산 불용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세종)(1538-302)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사업은 세종시의 지방재정 악화 등으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않으면서 국비 전액이 불용(2억 5,000만원)된 만큼, 사업 추진 전 지방비 확보 가능성 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사업 추진 시 지방비 확보 가능성 등 사업 추진 여건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사업포기에 따른 예산 전액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산림휴양등산증진 사업의 낙찰·집행잔액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산림휴양등산증진(1743-301)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산림휴양등산증진 사업은 산림휴양서비스활성화, 휴양림통합예약시스템 유지관리, 국립산악박물관 유물구입, 산림레포츠센터 조성, 등산학교 조성, 숲길 안전관리, 숲길이용자쉼터 조성·운영, 동서트레일 조성, 국립울진동서트레일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산림휴양등산증진 사업은 예산현액 257억 4,800만원 가운데 181억 3,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70.4%에 그쳐, 대규모의 낙찰잔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함. - 낙찰잔액 및 집행잔액으로 상당 규모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만큼 실제 사업 집행규모를 고려한 예산편성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산림휴양등산증진사업의 실제 사업 소요와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낙찰잔액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산림레포츠센터 조성사업의 예산 편성 및 교부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산림휴양등산증진(1743-301)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국립문경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 및 ‘국립강릉산림레포츠센터 조성’ 사업은 필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사업 지연과 예산 이월이 반복되었고, 선행절차 완료 전 공사비·감리비를 편성하여 2025년 각각 53억 2,200만원, 27억 9,000만원이 타 사업으로 전용되는 등 사전검토가 미흡하였음. - 국립문경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사업은 2024년부터 설계 지연이 예상됐음에도 2025년 공사비 47억 1,800만원과 감리비 4억 5,400만원을 편성함. - 국립강릉산림레포츠센터 조성사업 또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사비와 감리비를 편성함.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대규모 시설사업의 예산편성 전 실시설계 진행률, 인허가·부지 확보 및 총사업비 협의 여부, 연내 실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별 사전점검 체계를 마련하여 선행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공사비가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산림레포츠센터·등산학교 조성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집행 가능성이 확보된 경우 예산을 배정·교부하는 등 철저한 예산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공립밀양산림레포츠 센터 조성 사업의 보조금 교부지침 위반 및 전액 환수에 대한 철저한 정산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산림휴양등산증진(1743-301)	주의	산림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공립밀양산림레포츠센터 조성’ 과 관련해 산림청은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제17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비 부담 능력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보조금을 지급·관리함으로써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함. - 사업 첫해인 2024년 경남 밀양시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미집행되어 이월되었고, 2025년에도 실시설계비 편성 예산액 4억 8,1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2024년 이월액과 2025년 교부액 모두 불용됨. ○ 지방비 미확보로 인한 전액 미집행에도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조치는 없었고, 2026년 밀양시 사업 포기 결정으로 보조금 환수 조치가 진행 중임.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교부방법을 위반하여 공립밀양산림레포츠센터 조성 사업 보조금을 교부 및 관리해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였으므로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립밀양산림레포츠센터 조성에 교부된 2개년 국고보조금 전액의 조속한 환수를 위해 노력하며 보조금 정산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8	치유의 숲 조성사업 예산 과다편성 방지 및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산림교육치유활성화(1743-302)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치유의 숲 조성’ 사업(울산 및 대구)은 2025년도 건설보상비(토지매입) 예산(50억원)을 구체적 소요에 대한 사전 검토와 계획 없이 과다편성하여 28억 9,000만원(57.8%)이 산림재해대책비로 이용감되는 등 예산의 77.5%가 이용·이월·불용처리되었음. - 치유의 숲 조성지 2곳 모두 2024년 초부터 대상지 확정 및 토지매입 절차가 진행되었고, 특히 울산의 경우 주요 대상지의 토지매입이 2024년에 완료되었음에도, 2025년 토지매입 예산을 과다편성하여 전체 건설보상비 예산의 22.5%만 집행함.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추진 시 실질적인 소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와 면밀한 계획 수립을 선행함으로써 연내 집행 가능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대규모 이·전용 및 이월·불용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과다편성을 방지하고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일반회계와 녹색자금 간 명확한 역할 구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산림교육치유허성화(1743-302)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국립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일반회계와 녹색자금으로 유사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재원별 지원기준과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일부 국립 치유의 숲에만 녹색자금이 지원되어 지자체 간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일반회계와 녹색자금 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취약지역 지원 등 복권기금 재원의 공익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운영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를 제고 및 고액 채납액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정부담금(59-593)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액은 2021년 376억 3,600만원에서 2025년 722억 9,000만원으로 5년 사이 약 1.9배 급증하는 등 미수납액이 고액·장기 채납자를 중심으로 매년 반복해 발생하고 있음. - 10억원 이상 고액 채납은 단 10건(0.9%)임에도 전체 미수납액의 31.7%(157억 7,800만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당 평균 채납액도 15억 7,800만원으로 높아 고액 채권 중심의 집중 관리 필요 - 2년 이상 경과된 채납 건수는 290건(26.7%), 금액은 93억 200만원(18.7%)에 달하고 있어, 장기 미납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적인 관리 대책 마련 필요 - 최근 국세청은 장기 국세 채납자의 납세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산림청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채납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채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징수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는 등 면밀한 관리와 제도개선을 통해 미수납 규모를 최소화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사업지연 및 예산 이월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자연휴양림조성(자본)(1732-301)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 및 관련 협의 지연으로 상당 규모의 예산이 연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된 만큼 공사일정과 협의 절차를 고려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 동 사업은 예산현액 400억 9,900만원 가운데 316억 7,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79.0%이며, 동절기 공사중지 및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65억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 시 동절기 공사중지 및 협의 절차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 이월을 최소화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대규모 산림복원 사업의 대규모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산림복원(1933-302)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대규모 산림복원’의 실적행률은 2022년 98.2% → 2023년 93.7% → 2024년 72.2% → 2025년 63.8%로 4년 연속 하락하고 있으므로, 해당 연도에 실제 시공이 가능한 물량을 넘어 예산을 편성·교부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 가리왕산 복원사업은 4년차 계속사업으로 연간 공정계획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음에도, 전년도 이월액 47억 8,4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72억 5,100만원 증액 편성하여 133억 2,300만원이 다시 이월됨.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대규모 산림복원 사업의 예산을 연차별 공정계획과 실제 집행 가능한 물량에 맞추어 편성하고, 보조금은 공정 진행에 따라 나누어 교부하는 등 대규모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사전검토 미흡에 따른 추경편성 예산의 집행부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산불방지대책(2332-300)		산림청
		지적사항	○ 고정익항공기 물탱크 및 고성능 산불방지드론 도입사업은 관계기관 협의, 제작사 기술 검토 및 시장조사, 제작사의 수리·개조 권한과 장비 호환성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음. - 고정익항공기 물탱크 도입사업은 2024년 군 수송기 확보를 위한 국방부 및 공군과의 사전협의를 무산됨에 따라 80억원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고, 2025년 고정익항공기 물탱크 도입 추경예산 80억원 또한 물탱크제작사로부터 군 수송기 기체 내부 전력패널 장착이 불가함을 통보받아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음.		
			○ 산림청은 항공기 물탱크 도입사업의 2년 연속 예산 불용 경위를 조사하고, 사업 검토·예산 편성·집행 과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며, 고정익항공기 물탱크 도입을 재추진하기 전 공군 수송기의 기종별 기술적 호환성, 전력패널 장착 가능 여부, 제작사 개조 승인권한, 운용·정비 책임 및 비용분담 방안을 국방부·제작사와 문서로 확정할 것	주의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신규 특수장비 도입 등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시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관계기관 협의·기술검토·시장조사 실시 및 장비 도입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사전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할 것	제도개선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추경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부적절 및 집행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의 추경 편성 지양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산불방지대책(2332-300)		산림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고성능 산불방지드론’은 국산 고성능 산불방지드론 45대와 드론 전용 운반 차량 15대를 도입·배치(드론 3대와 차량 1대를 1세트로 각 지방산림청 등 배치 계획)하는 것으로 추경편성(36억원)되었으나, 기술평가 기준 미달 및 외산(중국산) 드론만 입찰에 참가하여 유찰됨에 따라 고성능 드론은 미도입되고, 드론 차량만 기존 보유 드론 운반용으로 구입(15대, 8억 7,300만원 집행)함. - 산림청은 고성능 산불방지드론 미집행액(27억원)을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나, 추경예산을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전용하여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것은 국회의 추경 심의 및 의결 취지에 반하는 것임.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추경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 검토와 계획 수립을 강화하여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집행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의 추경 편성은 지양하고,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핵심장비 확보 여부와 연계하여 지원장비의 도입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제도개선	
			○ 산림청은 추경 예산을 당초 사업목적에 달성하지 못한 채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것이 국회의 추경예산 심의·의결 취지에 반해 사업목적에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 추가 지연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산림헬기 도입·운영(2333-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산림헬기 도입 사업은 계약에서 도입까지 약 4년이 소요됨에도 사업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여, 예산의 일부가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연부율이 명확한 기준 없이 매년 임의로 산정되어 예산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음. - 산림청은 2025년도에 본예산으로 대형헬기 3대(3년차 1대, 2년차 1대, 1년차 1대) 및 중형헬기 2대(2년차 1대, 1년차 1대), 추경을 통해 도입이 결정된 대형헬기 3대(1년차 3대) 및 중형헬기 3대(1년차 3대)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대형헬기 4대분에 대한 1년차 예산 653억 4,600만원 전액이 차년도로 이월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실제 헬기 제작 및 행정 소요 기간을 반영하여 당초 사업 기간을 현실성 있게 4년으로 조정하고, 산림헬기 도입 시 과거 계약 사례, 실제 공정률, 연도별 실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연부율 산정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사업비의 연례적인 이월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 설계를 고도화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6	불요불급한 산불진화헬기 임차 예산 추경 편성 지양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산림헬기 도입·운영(2333-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산림청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으로 대형 산불진화헬기 3대의 임차 예산 159억 1,500 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해당 헬기의 실제 계약 및 사용 시기는 2026년 봄철 산불대응에 사용(계약기간 2026.2.8.~5.15.)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남. - 산림청은 2025년 초에 당해연도 봄철 산불대응을 위한 중형헬기(2대) 임차 시 입찰부터 도입까지 2개월만 소요된 선례가 있음(입찰 1.9.→계약 2.4.→도입 3.15.) ○ 특정 연도에 사용되는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해당연도 예산에 편성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2026년에 사용할 헬기 예산을 전년도인 2025년 추경으로 앞 당겨 편성한 것은 부적절함.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봄철 산불대응 임차 소요의 경우 사전예측이 가능한 만큼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하고,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증액 요구가 있더라도 회계연도 원칙 부합 여부와 시급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소요가 불요불급하게 추경 으로 앞당겨 편성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7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수준별 국가 주도 방제체계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산림병해충방제(2335-300)	제도개선	산림청
		지적사항	○ 소나무재선충병은 2024년 약 89만 9천 그루였던 피해가 2025년 약 148만 6천 그루로 65.3% 증가했음에도 2026년 국비 방제예산은 2025년보다 0.05% 증가하는 데 그쳐 피해 증가추세가 차년도 방제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 2026년 방제율도 중앙정부 소관은 99.9%인 반면 지방정부는 61.9%에 그쳐 약 38%p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지방정부의 인력·전문성 및 재정여건에 따라 방제성과가 달라질 경우 인접지역으로 재확산될 우려가 큼.		
		시정요구사항	○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전년도 피해규모와 증가율을 다음 연도 방제계획 및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피해 극심지역에는 국가의 예산·인력과 전문기관을 집중 투입하며, 신규·경미지역은 초기에 집중 방제하는 피해수준별 “선택과 집중” 방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연도별 감염목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것		

마. 해양경찰청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경비합정 안전사고 재발 방지 및 국유재산 손실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경비대테러역량강화(3102-300)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해양경찰청 경비합이 2025년 2월 서귀포 연안구역 경비 중 당직자의 경계 소홀로 좌초되어 불용 처리되는 국유재산 손실이 발생하였음. - 해양경찰청은 2019,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경비합정 좌초사고의 원인, 과실에 따른 책임 추궁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를 받아 「합정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였음에도 이후 합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전문교육과정 운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사고 당직관 및 당직원은 사이버교육만 이수하였고, 지도점검 시 안전운항 분야에 대한 점검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합정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안)	○ 해양경찰청은 「합정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이행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실질적인 현장 중심 역량강화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항해 중 위험 상황에서의 판단·대응역량과 같은 핵심 안전사고 예방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항목을 보완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자체양성과정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인력 수급 관리 체계 보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항공기정비유지(3103-301)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회전익조종사 자체양성’은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회전익항공기조종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 여건 상 국외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국외교육여비 소요가 예상되었음에도 이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국외교육여비를 항공보험료 낙찰차액에서 전용하여 충당하였음. - 전용 재원으로 사용한 항공보험료 낙찰차액의 경우 2024년 결산 심사 시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을 시정요구 받았던 사항임. ○ 해양경찰청 회전익 조종사 현원은 최근 5년 동안 한 차례도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중도퇴직자가 전체 퇴직자의 84.1%에 달하는 등 연례적 결원이 계속되고 있음. - 해양경찰 조종사의 경우 산림청, 소방청 조종사와 달리 별도 위험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고 매년 4명을 양성하는 자체 양성계획만으로는 구조적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안)	○ 해양경찰청은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자체양성과정에 소요되는 국외교육여비를 사업예산에 적절하게 반영함으로써 항공보험료 등 타 예산의 전용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양성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회전익 조종사 자체양성 인원의 확대 및 안정적인 양성체계 운영, 업무 난이도와 위험도에 상응하는 재정적 보상, 장기근속 유인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력수급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충원을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사업 범위 설정 미흡에 따른 사업 지연 및 유지보수 공백 발생 등 사업 추진 부적절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해양경비지원시스템구축관리(정보화)(7238-301)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해양경비지원시스템구축관리’ 사업은 불법 외국어선, 주변국 관공선, UN 제재선박, 밀수·밀입국 등 안보·안전 위협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융합·분석하는 종합 해상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임. - 동 사업 계획 수립 시 학습데이터*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하여 추진과정에서 사업 계획이 크게 변경되고 일정이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한 유지보수 발주 지연으로 약 10개월간 유지보수 공백이 발생하였음. * 당초 국내에서 획득한 선박 신호 및 제원 데이터만을 학습데이터 대상으로 하였다가 사업 추진 3년차인 2024년에 이르러서야 세계 선박 신호 및 선박제원정보 등 600여종의 대규모 데이터(세계 선박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확대 조정하였음.		
		시정요구(안)	○ 해양경찰청은 향후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사업 기획 단계에서 사업 목표, 사업 대상 및 범위 등을 충분히 조사·분석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구축사업과 유지보수 사업의 일정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중요정보시스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위성센터 건축 사업의 사전 준비 미흡	관련사업명	국유재산관리기금-해양경찰청 기타시설 취득(6033-300)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위성센터 구축’은 당초 2024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같은 해 8월에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1년 6개월 정도 사업이 지연되어 2026년 3월에야 착공되었음. - 지연의 주요 원인은 총사업비 조정(90.1억원 → 161.85억원)을 총 4차례 실시함에 따라 준공 일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임. - 기획단계에서의 시설물의 특수성과 공사 난이도에 대한 검토 미흡으로 감리방식이 일반감리에서 건설사업관리(CM)로 변경되었고 당초 예산에 철거비, 연약지반처리비, 대지 조성비 등 필수 공정항목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정보통신 운영규칙상 화재 예방용 가스소화 설비,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법령상 필수 시설조차 예산 편성에 반영되지 못하였음.		
		시정요구(안)	○ 해양경찰청은 향후 특수 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한 관련 법령상 필수 시설 요건과 공사 난이도를 검토하여 예산에 누락없이 반영하고,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단가 산정 체계를 표준화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도와 사업 계획의 정밀도를 제고함으로써 총사업비의 반복적 조정에 따른 사업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해양재난구조대 법정 의무교육 이수율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수색구조역량강화(3001-301)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해양재난구조대 지원’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해양재난구조대의 교육·훈련 실시, 기동복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대상으로 해양재난 관련 교육·훈련을 매년 1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무교육 이수율은 극히 저조하였음. - 2025년 기준 교육·훈련 실적 기준 교육 대상 12,290명 중 중복인원을 제외한 실제 교육 참여인원은 4,344명(35.3%)에 불과하고, 법정 기준인 10시간 이상을 이수한 비율은 1.6%에 그쳤음. ○ 법정 의무교육 이수율이 낮은 상황에서도 위탁기관의 교육 성과와 미이수자 관리 실적이 실질적인 사업 평가 및 차년도 사업에 충분히 환류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안)	○ 해양경찰청은 해양재난구조대 법정 의무교육의 시기·방식을 현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온라인·현장형 교육체계 도입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며,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사업 평가에 법정교육 이수실적을 반영·환류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KOLAS 인정 컨설팅 용역의 장기 소요기간을 반영하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 인한 이월 부적절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과학수사역량강화(3102-305)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지문감정 KOLAS 인정’은 과학수사 결과의 법적 증거능력 확보 및 수사 공신력 향상을 위하여 지문분야의 KOLAS 인정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임. - KOLAS 인정은 통상적으로 1년이 넘게 소요되는 용역임에도 단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이 발생하였고, 단년도로 예산이 편성된 이상 회계연도 시작 전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착수하였어야 함에도 계약 체결이 지연되었음. ○ 해양경찰청은 2025년도 지문분야, 2026년도 디지털포렌식 분야에 대한 인정만을 추진 중이며 이 외 추가 분야에 대한 인정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경찰청 및 검찰청은 6개 분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9개 분야에서 KOLAS 인정을 획득하여 운영 중인바 현재 KOLAS 인정 2개 분야에서 그치게 되는 것은 타 수사기관과의 역량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안)	○ 해양경찰청은 향후 사업기간이 회계연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용역을 추진할 경우, 실제 소요기간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계약 체결 준비를 철저히 하며, 타 수사기관과의 과학수사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해 지문·디지털포렌식 분야에 그치지 않고 해양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KOLAS 인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국제범죄 대응 컨퍼런스 수의계약 방식의 계약 체결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외사경찰활동지원(3102-302)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외사사범단속활동’에서는 2022년부터 매년 해양 국제범죄 대응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는데 2025년의 경우 영상·음향, 행사진행, 행사물품 제작 등 3건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동일한 행사를 위한 용역을 분할함으로써 건별 계약금액이 낮아져 건적 비교 의무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었고, 특히 단일 계약으로 발주하였다면 수의계약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을 건을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 분할이 수의계약 요건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임. - 또한 전문성 있는 업체 선정이 목적이었다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활용하여 경쟁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안)	○ 해양경찰청은 향후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용역을 합리적 근거 없이 분할하여 계약금액을 낮춰 건적 비교 의무를 회피하거나,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전문성·기술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함정건조·항공기 도입 사업 기본계획과 실제 도입 실적의 격차 해소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함정건조(3101-300), 항공기도입(3101-301)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정 및 헬기 등 항공 수색 장비의 도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과 실제 도입 실적 간의 차이가 지속되고 있음. - 함정건조의 경우, 기본계획에는 대형함정 2척(서해전력증강 예인정 1척, 대형함정 대체 1척), 100톤 대체 2척, 형사기동정 대체 2척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에 미반영되었고, 반면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형함정(단속전담함정) 2척과 연안구조정 8척 등은 실제 예산에 반영되어 도입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됨. - 항공기도입의 경우 기본계획상 대형헬기 및 터보프롭 각 1대를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예산에 미반영되어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시정요구(안)	○ 해양경찰청은 장비 노후화에 의한 안전 공백 방지를 위해 연간 함정 건조 소요 재정 조달 가이드라인을 재정 당국과 정례적인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하여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향후 차기(제2차)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반영하여 함정 및 항공기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것		
9	실집행 가능성이 없는 국외여비 반복 편성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항공기도입(3101-301)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해양경찰청은 항공기도입 과정의 현장 점검을 위하여 해당연도 출장 수요와 예산명세 등을 직접 제출해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장점검 원칙과 달리 서면 등으로 대체하면서 예산 2억 1,100만원 중 절반이 넘는 1억 2,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지속해서 ‘항공기도입’ 사업에서 예산 불용이 발생하였고 특히 2024년과 2025년은 업무와 직결된 국외업무여비가 거의 집행되지 않았음.		
		시정요구(안)	○ 해양경찰청은 공정 과정별 현장점검 수요 재점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항공기 도입 일정과 실제 사업 공정을 면밀히 반영하여 국외여비를 편성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함정 유류관리(3104-300)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유류바지 노후대체 건조(3척)’ 사업의 경우 당초 2025년에 계약을 체결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 었으나, 입찰이 지연됨에 따라 1차년도 사업비(자산취득비, 부대비, 감리비) 34억 800만원 전액이 2025년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 이는 조선업계의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이라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 현실적인 단가로 예산을 과소 편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임. ○ 또한 재정 당국과의 공식 협의 없이 당초의 예산 편성 내역을 변경하여 결과적으로 총사업비를 우회적으로 증액시킨 것으로 보임. - 해양경찰청은 내부 회의를 통해 건조 및 공사비를 감액하였으나, 이는 유류바지선의 필수 내부 시설물을 입찰 대상에서 제외한 결과로, 결국 축소된 사업범위 대비 건조단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결과가 되었고, 제외된 필수 시설물 역시 별도 예산을 활용하여 추가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바, 당초 계획 대비 총사업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시정요구(안)	○ 해양경찰청은 향후 예산 편성 시 시장 동향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적정 소요 예산을 편성하고 반복 유찰 방지를 사유로 필수 내부 의무 설비를 제외하거나 차기 회계연도로 분할 편성하는 부적절한 예산 조정을 지양하고, 총사업비 증액이 수반되는 내역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재정 당국과의 공식 협의 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연말 불용예상액을 활용한 시급하지 않은 시설유지보수비 사용 부적절	관련사업명	일반회계-교육원지원(7203-307)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해양경찰청은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교육훈련시설장비유지 관리용역비 1,200만원과 부대시설지원 관리용역비 9,300만원을 활용하여 1억 5백만원을 당초 5,600만원만 반영되어 있던 교육훈련시설 노후도 개선 시설장비유지비로 세목조정 (2025.11.17.)하였고 이후 35건의 유지보수를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였음. - 계약관계로 인한 낙찰차액은 계약 이후 확정되는 것으로서 유지보수가 시급하였다면 연말이 아니라 관리용역비 불용이 확정되었을 때, 조정하여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집행일 것임.		
		시정요구(안)	○ 해양경찰청은 교육원 관리용역비의 예상 불용액을 시설유지보수비로 조정할 경우 불용액 확정시기와 시설보수의 시급성을 검토하여 계획적으로 집행함으로써 향후 동일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12	서부정비창 신설공사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관급자재 관리 부실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해양경찰서부정비창신설(3103-303)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해양경찰청은 서부정비창 신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관급자재 대상 자재를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후 문제를 인지하고도 적시에 시정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등 법률 미준수 행위가 발생하였음. - 동 사업에서 관급자재 대상 총 54건(371억원) 중 실제 관급자재로 시공된 것은 37건(264건)이었고, 추후 절차를 거쳐 관급자재 예외 승인된 것이 2건(10억원), 별도 승인 없이 사급자재로 시공된 것이 15건(97억원)이었음. ○ 이러한 관리·감독 부실의 배경에는 대규모 국책 건설사업에 건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안)	○ 해양경찰청은 향후 대규모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시설계 확정 단계에서부터 관급자재 대상 여부 등 계약 법령 적합성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반영하는 사전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전문직렬 인력의 배치 또는 외부 전문인력 활용을 통해 사업이 적법하게 관리·감독되도록 하는 개선 조치를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함정부품 구매과정에서 소요자재 자체 확인 누락 및 검증절차 미흡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함정계획정비(4231-301)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 해양경찰청은 함정 스티튜브 썰 예비품 구매 시 원제작사 현장점검 결과에만 의존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자재번호 오기재로 인한 계약변경 및 예산 이월이 발생하였음. - 원제작사의 오기재가 주된 원인이라 하더라도 계약 발주의 최종 책임은 발주기관인 해양경찰청에 있는 만큼 해양경찰청은 잘못된 발주로 인한 계약변경, 납기 지연, 예산 이월 등의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보기 어려움.		
		시정요구(안)	○ 해양경찰청은 함정부품 구매 시 원제작사의 현장점검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재번호와 규격에 대한 추가 검증 및 확인 절차를 개선하고 함정별 부품정보 및 교체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소요자재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비역량을 갖추 것		

(3) 부대의견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내역을 공개하고, 지원에 따른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는 등 기금 운용·관리체계를 개선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반복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과 농지연금 사업의 조기 마감 및 신청자 대기 적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한 예산 확대 및 농지관리기금 운용 효율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경이 불가능한 고령농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의 방치를 방지하고, 영세농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령농 소유 필지에 대한 매입 면적 기준 완화 및 연접 필지 묶음 매입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1067-332)의 성과가 목표 대비 203%에 달하는 만큼, 향후 현장 수요를 반영한 성과목표를 세우고 해당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안정적인 예산을 책정하도록 노력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의 기본소득 사용처 제한 완화와 국비지원 비율 상향을 검토하고,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략작물 제품 판로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홈쇼핑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온라인 및 라이브커머스 지원 등 다변화된 판로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전략작물산업화를 통해 육성장려한 작물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수매비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우선 배정을 검토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여곡 제도의 신청자격, 시장에 미치는 영향, 현장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의 필요성 여부를 점검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에서 침체된 경마산업의 재정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경마장을 글로벌 복합 레저·관광 명소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파·고추 등 저장이 어려운 품목의 경우 산지조직이 재고를 통해 출하 시기를 조절할 수 없어 계약재배 참여 유인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해당 품목의 저장·선도유지 기술 개발과 산지 저장시설 확충 방안을 관계기관 및 연구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약재배 지원 체계에 반영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사업의 지자체별 집행 부진 원인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의 매몰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산 분할 교부 체계를 마련하여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양곡관리비 조작관리비의 보관료 및 가공료 예산이 부족하여 연례적으로 예산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2027년도 예산 편성 시 단가를 현실화하여 반영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축사 전환에 필요한 축사 증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허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나.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ODA 사업 추진 시 수원국의 여건과 보조사업자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실제 필요한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수원국 정부 및 현지 수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 해양수산부는 연구개발사업(R&D)의 성과지표 등 관리가 미흡하므로 성과지표 설정 기준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지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는 해양 및 수자원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상시적이고 다양한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 해양수산부는 포항영일만신항(1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 기간이 다음 연도까지 계속되는 감리 용역에 대해 계약금액에 일률적 선금 비율 적용을 지양하고 해당 연도의 실제 공사 물량, 감리업무수행 기간 및 자금 소요를 기준으로 선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유선과 도선의 친환경선박 건조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고 보조율 및 지원한도 기준을 현실화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지원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은 현장맞춤형발농업기계고도화(R&D)(1136-344) 사업과 관련하여 발작물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기술이전 실적이 감소한 사유를 분석하여 현장수요에 맞는 기술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농촌진흥청은 연구개발(R&D) 사업의 유효 보유특허가 2021년 4,321건에서 2025년 4,916건으로 증가하였으나 활용률은 45.0%에서 46.8%로 정체된 반면, 등록 후 5년 이상 장기 미활용 특허는 1,322건에서 1,717건으로 395건(29.9%) 증가하였으므로, 장기 미활용 특허 전체를 정기 재평가 대상으로 두고 계속보유·활용촉진·권리정리 등으로 관리방향을 차등화하도록 노력한다.
- 농촌진흥청은 파속채소연구소 구축(R&D)(1231-306) 사업과 같이 예산요구 이후 선행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사 과정에서 후속 공사비의 집행 가능성을 재검증하여 연차별 소요액을 조정하도록 노력한다.

라. 산림청

- 산림청은 탄소중립 실천 및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하여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재제품의 이용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마.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은 향후 R&D 사업 추진 시 연구 대상의 선정 기준이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선정 근거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도록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해양경찰청은 과제 범위 축소에 따른 사업 목적과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탄소중립 해상환경변화에 따른 방제대응기술개발사업의 목적을 ‘차세대 무탄소 연료(수소·암모니아) 기술 선점 및 대비’로 현실화하여 조정하고, 실제 해상 방제 현장에서 노출 위험이 높고, 안전 확보가 시급한 LNG·메탄올 탐지기술 개발을 위하여 별도의 방제대응기술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여 추진한다.
- 해양경찰청은 여수해양경찰서의 관리부담이 커져 전남동부해역 치안 공백이 우려되므로 고흥해양경찰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해양경찰청은 ‘범죄수사활동’ 사업이 해양 치안 등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며 연례적으로 높은 집행률 성과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양범죄가 지능화되고, 해양사고가 복잡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과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해양경찰청은 ‘함정정비유지’ 사업이 해상 치안 및 어선·인명 구조의 핵심 자산인 함정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필수 사업임을 고려하여, 노후화에 따른 정비 수요 증가와 단가 상승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한다.